

일러두기

- 본 통일교육지침서는 각급 학교(초·중·고)에서 통일교육을 일관성 있게 그리고 체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통일부 통일교육원에서 관련 기관 및 전문가, 일선 교육현장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 각급 학교에서는 본 통일교육지침서가 제시하고 있는 통일교육의 목표와 주안점, 내용체계 및 지도방향, 권고사항 등에 따라 학생들에게 통일교육을 실시하여 주기 바랍니다.
- 아울러, 본 통일교육지침서의 내용과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통일교육원 교육총괄과(서울 강북구 4.19길 275, 전화 901-7173)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010
통일교육지침서

통일부 통일교육원

목 차

I. 통일교육의 목표	07
-------------	----

II. 통일교육의 주안점

1.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 제고 및 통일의지 확립	15
2. 통일시대 대비 역량 강화	16
3. 자유민주주의 가치에 대한 확산 및 민주시민의식 함양	17
4. 민족공동체 형성 노력	17
5. 국가안보의 중요성 인식	18
6. 북한에 대한 올바른 이해	18

III. 통일교육의 내용체계

1. 통일문제의 이해	23
가. 통일문제의 성격	23
나. 분단의 배경과 폐해	24
다. 통일의 필요성	27
라. 통일의 접근방식	28
마. 통일국가의 미래상	30
2. 북한 이해	32
가. 북한에 대한 인식	32
나. 북한의 정치·외교	33
다. 북한의 군사	37
라. 북한의 경제	38
마. 북한의 사회·문화	41
3. 통일환경의 이해	47
가. 국제정세의 변화	47
나. 통일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48

4. 통일정책	50
가. 우리의 통일방안	50
나. 역대 정부의 평화통일 노력	51
다.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	55
5. 통일을 위한 과제	60

IV. 학교급별 및 교육과정별 권고사항

1. 학교급별 권고사항	67
가. 초등학교	67
나. 중·고등학교	68
2. 교과별 권고사항	70
가. 도덕과	70
나. 사회과	71
다. 국어과	72
라. 예체능과	72
3. 정규과정 외 교육활동에 관한 권고사항	74
4. 창의적 체험활동에 관한 권고사항	75
5. 사이버 통일교육에 관한 권고사항	76
6. 시·도교육청에 대한 권고사항	78

부록

통일교육 현장 체험지 안내	82
통일교육원 홈페이지 주요 자료 안내	91
북한 및 통일문제 관련 웹사이트	95
북한 및 통일문제 관련 방송프로그램	97
통일교육지원법	98
통일교육지원법 시행령	104



I

통일교육의 목표



통일교육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 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도록 하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통일교육지원법 제2조)

통일교육의 목표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 밖으로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을 천명한 우리나라 헌법전문과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라고 규정한 헌법 제4조의 정신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통일교육은 다음의 세부적 목표들을 추구한다.

1. 자유민주주의적 가치와 민족공동체 의식을 토대로 한 통일관 정립

우리 헌법은 우리 사회의 기본이념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며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고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보장한다.

통일철학으로서의 자유민주주의는 남북한이 하나가 된 민족공동체의 틀 속에서 구성원들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고, 남북한 구성원들 간의 차이를 극복하는 사회적 관용과 배려의 정신이 존중되는 사회를 지향한다.

따라서 자유민주주의가 통일한국에서도 사회구성원들의 화합을 이끌어내는 기본 이념으로 작용할 것임을 인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통일한국이라는 정치공동체는 그 인식의 토대를 민족적 유대로부

터 찾는다. 민족공동체 의식은 장기간의 분단 상황 속에서 파생된 남북한 간의 이질감을 극복하고 통일한국에 자유민주주의적 가치가 순조롭게 뿌리 내리도록 하는 토대가 될 것이다.

우리의 미래지향적 통일관은 자유민주주의적 가치와 민족공동체 의식이 선순환적 구조를 이루는 정치공동체로서의 통일한국을 구현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통일교육은 자유민주주의적 가치와 민족공동체 의식이 상호 조화롭게 융해될 수 있는 열린 마음의 통일관을 제시하여야 한다.

2. 평화통일의 의지와 역량의 함양

통일교육은 통일에 대한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관심과 사명감을 신장시키고 평화적 통일을 이루기 위한 사회적 역량을 제고하는 것을 중요한 목적으로 한다.

분단이 장기화되면서 우리 민족의 번영을 위해 유용하게 사용될 자원들이 남북한 간의 소모적 경쟁에 소비되고 있다. 통일의 달성은 이러한 자원의 낭비를 막고 나아가 민족의 위상과 역량을 한층 더 높이게 될 것이다.

그러나 통일은 단순히 의지의 표출만으로는 성취될 수 없으며, 통일을 위해 필요한 역량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쌓아나갈 필요가 있다.

북한 핵문제 해결 및 상생·공영의 남북관계 발전을 통해 새로운 평화구조를 만들어내고,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을 추구하는 정부의 노력도 궁극적으로 평화통일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3. 통일환경 및 북한에 대한 객관적 이해와 건전한 안보관 확립

21세기의 국제정치 질서는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에 급격한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남북한 간의 관계도 복잡성을 띠는 가운데 북한 사회의 내부 움직임도 과거와는 다르게 유동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통일교육은 빠르게 변화하는 대내외적 통일 환경과 북한의 실상 등에 대해 국민들이 왜곡 없이 이해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토대로 현실적 정책대안이 무엇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안목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반도에는 국제적 안보환경의 변화, 남북한의 군사적 대치, 북한의 핵문제 등에서 비롯되는 여러 안보위협이 상존하고 있다. 따라서 통일교육은 이들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튼튼한 안보 역량이 갖추어질 때만 통일의 노력이 생산적 결실을 맺을 수 있음을 인식시켜야 한다.



II

통일교육의 주안점

1.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 제고 및
통일의지 확립
2. 통일시대 대비 역량 강화
3. 자유민주주의 가치에 대한 확신
및 민주시민의식 함양
4. 민족공동체 형성 노력
5. 국가안보의 중요성 인식
6. 북한에 대한 올바른 이해

최근 청소년들은 남북분단의 문제를 체험적으로 느끼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통일문제에 대한 가치관과 태도도 기성세대와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학교 통일교육은 통일시대를 이끌어 나갈 주역인 학생들의 올바른 통일의식을 제고시키고, 객관적 판단 능력을 신장시키며, 평화와 통일을 일구어 갈 수 있는 실천 의지와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데 의의가 있다.

1.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 제고 및 통일의지 확립

통일에 대한 사회 일각의 무관심이나 부정적 인식은 분단체제의 장기화가 빚어낸 남북 간 격차 및 이질성의 심화, 그리고 통합과정에서 야기될 비용과 혼란 등 통일의 후유증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통일에 드는 비용은 통일이 가져올 이익에 비하면 훨씬 적은 것이다. 통일은 남북한 간 경쟁과 대결에서 발생하는 소모적 비용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 국제사회에서 국가위상 제고와 경제적 기회의 증대, 사회적·심리적 안정 등과 같은 실질적 편익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가질 수 있는 통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불식시키고 통일문제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통일교육을 하여야 한다.

학생들에게 분단의 장기화에서 오는 여러 가지 고통과 폐해를 환기시키고, 통일 이후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이득과 혜택들을 국가적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개인적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통일이 분단 상황보다 더 나은 삶을 보장해준다는 확신을 갖게 해주어야 한다.

학생들은 민족사적 당위성보다는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어떤 이득을 가져다줄 것인지 등의 현실적인 이유에서 통일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느끼기 때문이다.

아울러, 평화적인 방법과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우리 민족 구성원 모두가 함께 자유와 번영을 누릴 수 있는 통일을 반드시 이루어 나가겠다는 사명 의식을 고취시켜야 한다.

2. 통일시대 대비 역량 강화

다가올 통일시대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에게 통일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통일은 단순히 제도적인 통합만이 아닌 심리적인 측면에서의 통합까지 의미하는 것으로 통일을 완성하기까지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요구된다는 것을 인지시켜야 한다.

또한, 우리가 구상하는 통일의 미래상은 민족 구성원 모두가 주인이 되고 구성원 개개인의 자유와 복지,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 내부에 민주주의를 더욱 공고히 하고, 성숙된 민주시민 의식을 함양해야 한다.

이에 따라 통일시대를 대비하여 우선 각계각층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성숙시키고, 학생들에게 상호 차이와 다름을 인정하고 포용하는 민주시민 의식과 민족공동체 의식을 함양시켜야 한다.

3.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에 대한 확산 및 민주시민의식 함양

학교 통일교육에서는 학생들의 바람직한 통일관을 정립하기 위하여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학생들에게 단순히 정부 형태의 비교를 넘어 생활 방식으로서의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깨닫게 하고 이를 기초로 민주시민의식을 함양시켜 나가야 한다. 통일 한국은 사회 구성원간의 차이를 민주적 의사소통을 통해 해결해 나가는 민주주의의 실천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학생들의 민주시민 의식 함양을 위해서는 자유민주주의의 원리와 절차에 대한 이해, 민주적 의사결정 및 문제해결 능력, 그리고 민주적 원리와 절차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통합적으로 신장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통일시대를 대비한다는 의미에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확산과 민주시민 의식은 사회구성원 간의 갈등을 해결하고 사회 내부의 화합과 단결을 추구하는 데 필요한 자질임을 인식시켜야 한다.

4. 민족공동체 형성 노력

통일은 단순히 분단이전 상황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더 나은 삶을 창조하기 위하여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인간의 존엄과 가치 존중 등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민족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다.

민족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통일교육은 북한주민을 동정심이나 우월적 시각에서 바라보지 않고, 같은 민족이자 상생·공영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이와 함께 민족 지상주의와 같은 편협한 민족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우리가 지향하는 민족공동체는 단순히 혈연에 기초한 폐쇄적인 민족주의가 아닌 다른 민족과 그들의 문화도 존중하는 열린 민족주의에 기초하고 있다.

5. 국가안보의 중요성 인식

냉엄한 국제질서와 한반도의 군사적 대치 상황에서 국가의 유지·보존을 위한 안보가 반드시 필요하며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시킨다.

튼튼한 안보가 뒷받침이 되어야만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고, 이를 토대로 남북관계가 발전되어 평화통일을 이룩할 수 있기 때문이다.

6. 북한에 대한 올바른 이해

분단을 해소하고 평화통일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통일의 상대방인 북한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가 필요하다.

북한은 우리와 함께 통일을 만들어가야 할 상생과 공존의 대상임과 동시에 분단이 해소되기까지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경계의 대상이기도 하다.

따라서 학교 통일교육에서는 학생들로 하여금 남북관계의 이중적 상황을 직시하고 이를 균형적으로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분단 이후 이질적인 체제를 유지해 온 북한과의 차이를 극복하고

하나의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북한 사회 현실 전반을 사실 그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Ⅲ

통일교육의 내용체계

1. 통일문제의 이해
2. 북한 이해
3. 통일환경의 이해
4. 통일정책
5. 통일을 위한 과제



1 통일문제의 이해

가. 통일문제의 성격

통일문제는 민족 내부 문제인 동시에 국제문제라는 이중성을 지닌다.

한반도는 제2차 세계대전의 종식과 함께 미·소의 한반도 분할점령으로 인해 양분되었다. 이후 북한의 도발에 의한 6·25전쟁으로 남북한 간에는 상호 증오심과 적개심이 깊어졌으며, 분단이 장기화되면서 남북한 간의 심리적 분단도 고착화되었다.

한반도는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 주변국들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동북아의 국제정치적 요충지가 되어 왔고 한반도의 통일문제에도 이들 주변국들의 이해관계가 깊게 얽혀 있다. 따라서 한반도 통일문제는 우리 민족 내부의 문제인 동시에 국제적 문제라는 이중적 특성을 갖게 된다.

남북한 당사자의 노력과 주변국들의 이해와 협력을 필요로 한다.

한반도 통일문제의 이중적 특성을 감안할 때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남북한 당사자 간의 노력뿐만 아니라, 미국을 비롯한 중국, 일본, 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국들의 지지와 협력을 필요로 한다.

한반도 통일에 대한 우리의 입장과 주변국의 입장은 서로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주변국들은 한반도의 통일을 자국의 국익이라는 관점에서 판단하기 때문이다. 독일통일의 경우도 통일에 대해 상이한 입장을 가졌던 주변국들의 지지를 이끌어냄으로써 가능했다.

따라서 우리는 한반도의 통일은 역사적 당위성을 지니며 주변국들의 이익과도 부합할 수 있음을 대외적으로 설득해 나감으로써 우리의 통일노력에 대한 이들 주변국의 지지와 협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주제를 다룰 때의 지도방향

통일문제의 이중성을 이해시킴으로써 통일이 우리 민족의 결집된 노력과 함께 주변국들의 지지와 협력을 통해 가능함을 이해시킨다.

나. 분단의 배경과 폐해

1) 분단의 배경

통일을 왜 이루어야 하고 어떻게 이를 것인가를 논의하려면, 먼저 현재의 남북 분단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그 성격은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한다.

일본의 식민통치와 뒤이은 미·소의 한반도 분할 점령으로 분단이 시작되었다.

남북 분단의 기원은 서구 열강의 세계 분할지배와 일본 제국주의의 한반도 식민통치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후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하면서 1945년 8월 15일 연합군 측에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자 미국과 소련은 일본군의 무장해제를 위해 한반도를 분할 점령하였다. 북위 38도선을 경계로 분할된 한반도에서는 미·소 간의 이념적 대립과 갈등이 표출되면서 분단이 시작되었다.

1945년 12월 모스크바 3상회의에서 미국·영국·소련이 한반도 신탁통치를 결의하자 자유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은 신탁통치에 대한 찬반 여부를 갈려 상호 대립하게 되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유엔은 한반도에서 선거를 통해 단일 정부를 수립하도록 결의하였으나, 38도선 이북 지역에 공산정권을 수립하고자 했던 소련의 거부로 이남 지역에서만 총선거가 실시되었다.

결국 1948년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두 개의 정부가 각기 수립됨으로써 정치적 분단이 시작되었다.

한편, 같은 해 12월 유엔은 대한민국 정부를 한반도 내의 유일 합법 정부로 승인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인정하였다.

6·25전쟁으로 분단이 고착화되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은 38도선 전 지역에 걸쳐 기습적 남침을 감행하였다. 6.25 전쟁은 수많은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가져왔다. 이는 민족구성원 상호 간의 적대감을 심화시키는 심리적 분단으로 이어져 한반도 분단을 장기화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 되었다.

2) 분단의 폐해

분단은 개인적 차원에서 정신적·물질적 희생과 고통을 수반하기도 하고, 민족적 차원에서 민족의 역량을 낭비하고 번영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분단은 남북한 간 대결구도를 지속시킴으로써 조화로운 민족공동체의 삶을 펼칠 기회를 제약해 왔다.

분단 상황은 남북한 사이에 소모적인 군비경쟁과 체제경쟁을 유발하고 전쟁 발발의 위험성을 내재한 군사적 대립을 존속시켰다. 이 같은 대립과 전쟁의 위험성은 다양한 경제적 부대비용을 초래하면서 남북한의 경제발전 추동력을 제약하였다.

아울러 분단 상황은 수많은 이산가족들과 납북억류자·국군포로 가족들에게 혈육과 이별한 채 살아야 하는 고통을 안겨주었다.

또한 남북한의 적대적 대결구도는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 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분단은 남한에서 대륙으로 통하는 통로를 단절함으로써 대륙과 해양의 연결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발전 기회를 박탈해 왔다.

한반도는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길목임에도 불구하고 분단으로 인해 대륙과의 육로 통행이 차단됨으로써 사회·문화·경제적 발전이 크게 저해 받고 있다.

이 주제를 다룰 때의 지도방향

분단의 배경과 과정을 설명하면서 대한민국 건국의 정통성을 인식시킨다.

한반도 분단이 국제적 요인과 민족 내부적 요인에 의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분단극복을 위한 통일과정에서 남북한 간의 협력과 국제사회의 지지 확보가 중요함을 인식시킨다.

분단의 장기화가 개인의 삶과 민족 전체의 발전에 미치고 있는 부정적 영향과 폐해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일깨워 준다.

다. 통일의 필요성

통일은 분단으로 굴절된 역사를 바로잡고, 민족의 역량을 극대화하는 조화로운 민족공동체를 구현시킨다.

우리 민족은 오랜 역사와 전통 속에서 조화로운 민족공동체를 구성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지난 60여 년에 걸친 남북분단은 민족구성원 간 상호 불신, 반목과 갈등을 부추기며 민족통합을 저해하는 주된 요인이 되어 왔다. 통일국가의 실현은 우리 민족의 총체적 역량을 결집시켜 민족의 발전과 번영을 위한 동력을 제공할 것이다.

통일은 남북 이산가족의 고통을 해소한다.

분단의 가장 직접적인 피해자는 이산가족들이다. 통일이 되면 오랫동안 왕래가 끊긴 채 고통 받고 있는 이산가족들이 자유롭게 만나고 함께 살 수 있다. 또한, 북한 주민도 자유와 복지, 인간의 존엄과 가치 존중이라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는 인도적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기본적 인권을 실현한다는 차원에서 통일이 필요한 이유이다.

통일은 구성원 개개인이 보다 풍요로운 삶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

통일한국의 건설 과정에서 다양한 분야에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수많은 고용 창출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경제적 편익 외에도 거주지 선택과 여행 기회의 확대와 같은 생활상의 편리와 음악·미술·영화·스포츠 등 각 분야에서 문화적 풍요도 향유하게 될 것이다.

통일은 다양한 경제적 혜택을 창출하고 한반도를 동북아 번영의 중심국가로 이끈다.

통일은 한반도에 단일 경제권을 형성하여 내수 시장의 확대를 가져오고, 남북한이 인적·물적 자원을 보완적으로 이용하게 함으로써 경제의 효율성을 높일 것이다. 남북이 통합된 한반도는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교량의 역할을 수행하고 동북아 시대의 번영을 주도할 것이다.

통일은 한반도에서의 전쟁 위험을 없애고 동북아 지역의 평화에 기여한다.

전쟁의 위험이 완전히 가시지 않은 한반도의 불안한 정세는 동북아 지역의 정세에도 영향을 미친다. 통일은 한반도에서의 전쟁 위험을 제거함으로써 동북아 지역은 물론이고 세계평화에도 기여할 것이다.

이 주제를 다룰 때의 지도방향

분단의 폐해를 환기시키고 통일의 필요성을 당위적·실리적·인도적 차원에서, 그리고 개인적·국가적·국제적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인식하도록 한다.

독일통일, 유럽통합 등의 사례를 통해 세계적 차원의 통합 흐름과 그 긍정적 측면을 강조한다.

라. 통일의 접근방식

통일은 남북 간 대화와 협상 등 평화적 방식을 통해 이루어야 한다.

통일은 전쟁 등 무력사용에 의존하지 않고 남북 간 신뢰와 합의를 바탕으로 평화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한반도에서 전쟁 재발을 방지하고 북한의 군사 위협으로부터 국민과 국가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안보 역량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추구하는 평화적 통일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상호 신뢰와 화해 협력의 정신에 의거하여 경제, 사회, 문화뿐만 아니라 정치, 군사, 외교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통일은 남북한이 통일역량을 점진적으로 구축해가는 방식으로 이루어야 한다.

오랜 분단에서 비롯된 남북한의 이질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꾸준하고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남북이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다양한 차원에서 교류협력을 확대해 나가는 과정이 바람직하다.

남북한 체제의 차이, 경제적 격차, 문화적 이질성 등을 극복하면서 통일 기반을 착실히 다져야 통일이 순조롭게 달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남북한이 점진적으로 통일 역량을 구축해 갈 때 공존공영을 위한 민족공동체는 자연스럽게 형성될 것이다.

이 주제를 다룰 때의 지도방향

평화적이고 점진적인 통일이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임을 이해시킨다.

마. 통일국가의 미래상

통일한국은 미래지향적 민족공동체의 형성·발전을 의미한다.

통일 직후 남북한 주민들 사이에는 경제력의 격차, 사회·문화적 가치 및 생활양식의 차이 등이 존재할 것이다. 통일국가는 이러한 격차와 이질감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하나의 조화로운 민족공동체를 지향해야 한다.

이때 민족공동체는 혈연적 의미의 폐쇄적 민족 개념을 넘어서서 열린 민족의 개념을 수용하게 될 것이다. 통일된 한국사회 역시 다문화 사회라는 21세기의 시대적 조류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통일한국은 민족구성원 모두에게 자유·복지·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자유민주국가를 구현한다.

통일국가는 구성원들의 자율성과 창의가 존중되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바탕을 두는 사회이어야 한다. 또한 민족의 총체적 역량이 발현된 선진경제를 기반으로 풍요의 혜택이 구성원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고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되는 복지국가이어야 한다.

통일한국의 구성원들은 활동영역의 확대와 폭넓은 선택의 기회를 향유한다.

통일한국은 국가·사회적 차원에서 전쟁 위협 소멸에 따른 군사비 감소, 자연자원과 인적자원의 상호보완적 활용 등이 가능하며, 경제적으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인구 8천만 명 수준의 국가로서 국제적 위상이 고양될 것이다.

또한, 통일한국의 구성원 개개인은 보다 개방된 공간을 배경으로 거주,

여행, 결혼, 직업 등 삶의 다양한 분야에서 선택의 기회가 넓어지고 보다 자유롭고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될 것이다.

통일한국은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하는 선진 일류국가를 지향한다.

통일은 아시아 및 유럽 대륙으로 뻗어나가는 열린 공간의 시대를 한민족에게 제공할 것이므로 통일한국은 21세기의 동북아시아대를 선도하며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기여하는 중심 국가가 될 것이다.

이 주제를 다룰 때의 지도방향

통일국가의 미래 모습을 제시함으로써 통일이 남북한 주민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생각해 보게 한다.

통일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설명하고 선진일류국가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음을 인식시킨다.

2 북한 이해

분단을 해소하고 통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북한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가 필요하다. 즉, 북한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실상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토대로 사실 그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 북한에 대한 인식

북한은 통일을 위한 화해협력의 상대임과 동시에 안보를 위협하는 경계의 대상이다.

분단이 해소되기까지 북한은 대화와 교류협력의 상대이자 한반도 평화체제가 정착되기까지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경계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북한을 경계의 대상으로만 볼 경우 남북한 간의 적대관계를 해소하기 어렵고, 반대로 북한을 화해협력의 상대로만 인식한다면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군사적 대치 하에 놓여있는 현실을 도외시할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이중적인 측면을 인식하는 가운데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면서 통일역량을 강화하는 지혜와 노력이 중요하다.

북한 실상에 대한 사실 그대로의 인식이 필요하다.

분단 이후 남북한은 상이한 체제를 유지해오면서 정치·경제·사회·문

화적으로 이질적인 요소들이 증가하였다. 이런 차이를 극복하고 하나의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남북한 간의 이질적인 요소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북한 실상에 대한 이해는 단순히 드러난 현상을 파악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현상을 야기하는 작동원리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정확한 자료와 정보에 바탕을 두고 북한 실상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도모해야 한다.

이 주제를 다룰 때의 지도방향

북한이 통일을 이루는 과정에서 협력의 상대이자 안보를 위협하는 경계의 대상이라는 이중적인 성격을 이해시킨다.

북한의 체제선전·주장과 실제 모습과의 차이점을 정확한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구체적 사례를 들어 지도한다.

이를 통해 북한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또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하게 한다.

나. 북한의 정치·외교

1) 북한의 통치이념과 정치체제

북한은 1인 절대권력자를 중심으로 전 사회가 일원적으로 편제된 유일자배체제이다.

북한은 모든 주민과 정치조직 및 기구가 절대권력자를 중심으로 움직이며, 유일자배이념을 통해 김일성-김정일의 1인 지배를 정당화한다. 또한

지도자에 대한 이상화와 개인숭배를 통해 주민들로 하여금 지도자에게 무조건 충성하고, 주어진 현실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게 한다.

이는 북한 사회의 폐쇄성과 경직성을 초래함으로써 외부 환경의 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북한의 정치체제는 '수령 중심의 당-국가체제'를 토대로 하면서, 군을 앞세운 선군정치(先軍政治)로 운영되고 있다.

북한의 정치체제는 김일성-김정일의 절대 권력과 이들의 혁명사상에 의해 지배되는 통치체제인 동시에 집단적 소유와 계획경제, 당-국가의 지배 체제를 근간으로 하는 공산주의 체제의 기본적 특성을 공유하고 있다. 당-국가체제에서 당은 국가권력의 원천으로 최고의 위상과 권한을 지니고 타 국가기관보다 상위에 위치하며, 모든 국가정책들은 당의 지도와 통제 하에서 추진된다.

당-국가체제는 1990년대 중반 김일성의 사망과 극심한 경제난, 대외고립 등의 위기 상황에서 군 중심의 위기관리 체제로 변화되었다. 이후 북한은 군대를 내세운 선군정치를 운영하면서 체제의 균열과 붕괴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북한에 있어서 선군정치는 군이 당보다 권력우위에 있다기 보다는 군대가 노동계급을 대신해 혁명과 건설의 주력군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은 선군정치를 통해 군대에 체제보위에 대한 사명감을 갖게 하고, 군대 문화를 사회 전 분야로 확산시켜 군사주의적 사회를 조성하려고 하였으나, 정작 선군은 군림의 수단이 되어 군대의 부패와 주민 착취라는 결과를 낳고 있다.

한편, 북한은 2009년 4월 헌법을 개정하면서 선군사상이 주체사상과 더불어 지도적 지침을 행사한다고 규정하였다.

이 주제를 다룰 때의 지도방향

북한 정치체제는 김일성-김정일의 절대권력과 유일이념에 지배되는 퇴행적인 체제적 특이성과 당-국가의 지배체제를 근간으로 하는 공산주의체제의 일반적 특성을 갖고 있음을 이해시킨다.

김정일 집권 이후 선군정치를 앞세워 주민통제와 체제운동을 하고 있는 실상을 규명하도록 한다.

2) 북한의 대외정책

탈냉전 이후 북한은 체제의 안정과 생존에 초점을 두고 서방 세계와의 관계 개선에 주력하는 등 외교의 다변화를 통한 실리를 꾀하고 있다.

냉전시기 북한외교는 한반도의 공산화 및 대남 외교우위 확보를 위한 외교역량 강화에 주력해 왔으나, 탈냉전 이후에는 체제의 안정과 생존에 초점을 두고 실리외교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구 사회주의 국가들의 체제전환 이후 북한은 국제적 고립을 탈피하고 체제 안정성 확보와 경제난의 해소를 위해서 미국 및 일본과의 관계개선, 그리고 중국 및 러시아와의 우호관계 증진을 위해 노력하였다. 특히 미북관계 정상화를 사회주의 체제 유지를 위한 핵심 관건으로 보고, 미국과의 대결상황 속에서도 관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유럽연합(EU) 등 서방국가들과 수교를 확대해 오면서 경제

적·인도적 지원의 확보를 추진하는 한편, 동남아 국가들과의 자원외교를 강화하는 등 체제 생존과 실리 확보를 위한 외교적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고 이의 중단 및 포기를 전제로 한 협상을 통해 국제사회로부터 체제보장과 경제적 지원을 얻어내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북한은 오랜 기간 핵과 미사일 같은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주력해 왔다. 1990년대 이후 북한은 미사일 발사 및 핵 실험 등을 통해 국제사회와의 대결 분위기를 조성한 후, 뒤이어 이를 매개로 체제보장과 경제적 지원을 동시에 얻어내려는 외교협상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북한의 이러한 전략은 국제사회와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을 야기하였을 뿐 아니라 북한의 국제적 고립을 심화시켜 왔다. 그동안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4년 북한과 제네바 합의를 체결하였고 2002년부터는 6자회담을 개최하였다. 6자회담에서는 2005년의 9.19 공동성명에 이어 2007년의 2.13 합의 및 10.3 합의 등을 도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2009년 이후 북한은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고 2차 핵실험을 강행하는 등 국제사회와 대치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북한은 중국, 러시아와 우호관계 증진을 통해 대미견제와 체제보장을 기하려 하고 있으나 이러한 북한의 전략은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북한은 전통 우방국, 특히 중국과의 외교관계 강화를 통해 미국의 압박정책을 견제하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고위급 인사의 상호방문 등을 통해 북한은 경제적 지원을 비롯한 다방면에 걸친 실리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냉전시대와 달리 오늘날 미국의 중국·러시아 관계는 갈등보다는

상호 이익을 도모하는 협력적 관계로 발전하고 있다. 더욱이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에 찬성하였다. 이는 북한의 외교전략이 한계에 직면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이 주제를 다룰 때의 지도방향

탈냉전 이후 북한이 경제회생과 체제보장을 위해 실리외교를 추진하는 한편,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는 등 공세적인 대외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한다.

북한이 직면하고 있는 대외관계의 현실과 북한의 외교전략을 설명한 후 그것이 통일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생각하게 한다.

다. 북한의 군사

북한은 체제유지 및 대외협상을 위한 도구로 군사력을 지속적으로 증강시키고 있다.

북한의 군은 노동당의 혁명무력으로서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이라는 슬로건 아래 국방과 경제건설을 담당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다.

북한은 현재 119만 명의 정규군과 함께 인구의 약 30%를 예비 병력으로 보유하는 등 병력 보유율이 세계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북한은 국가 경제력의 상당 부분을 군사비로 할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휴전 이후 무기의 자급자족을 위해 많은 군수공장을 건설하는 등 군수산업의 발전에 치중해 왔다. 그 결과 일부 전자 및 정밀 유도 무기, 고도의 항공장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무기를 자체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북한은 장거리 포, 생화학 무기, 미사일

등 각종 대량살상무기를 개발 배치하는 등 무력증강을 꾀하고 있다.

북한의 이러한 무력증강 움직임은 대남 군사우위 및 대외협상에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할 뿐 아니라 필요 시 이를 사용하여 대남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시도로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북한은 악화된 경제사정에도 불구하고 핵·미사일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왔고, 군사 훈련과 군수품 보급 및 장비 현대화를 위한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

이 주제를 다룰 때의 지도방향

북한은 재래식 무기, 대량살상무기의 개발 등 상당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에게 심각한 안보위협 요인이 되고 있음을 강조한다.

라. 북한의 경제

북한의 사회주의 계획경제는 사회주의권의 붕괴 이후 심각한 경제난에 빠져있다.

북한은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체제를 1960년대 초반에 완료하고, 중앙의 계획당국이 국영기업소, 협동농장, 기관 등에 생산지표와 경영지표를 하달하는 경제체제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북한의 사회주의 계획경제는 개인의 자율과 창의를 부정하는 계획경제 자체의 비효율성 문제 등으로 인하여 만성적인 결핍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다. 북한 당국은 이러한 문제를 대중동원과 대외원조 등을 통해 해결하려 했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었다.

특히, 사회주의권의 붕괴로 대외지원에 의존하던 원유 등 필수 원자재의 수급상황에 결정적인 불균형이 초래되어 산업가동 자체가 어려워졌다. 1990년대 중반에는 북한의 전반적인 산업가동률이 20%이하로 내려가는 상황에 이르렀다.

여기에 홍수·가뭄 등의 자연재해가 연속적으로 발생하여 식량생산에 결정적인 타격을 입었다.

북한의 계획경제는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시스템 유지에 필요한 원자재공급시스템과 배급제시스템의 기능이 마비되면서 사실상 와해되었다. 북한경제는 1990년대에 지속적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식량난, 에너지난, 생필품난, 외화난 등 경제난이 일상적인 현상이 되었다.

북한은 경제정책으로 선군경제건설 노선을 추구하고 있다.

북한은 경제난이 심화되고 계획경제체제가 마비되자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1990년대 말부터 국가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원을 국방공업 및 이와 연관된 기간산업에 집중 투자하는 선군경제건설 노선을 기본 경제정책 노선으로 채택하고 있다.

아울러 2002년에는 자생적으로 발달한 시장경제를 부분 활용하여 경제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7.1 경제관리개선조치를 시행하였다.

이는 체제유지와 경제회복을 동시에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사회주의 원칙을 지키면서 경제활동의 성과에 있어서는 최대의 실리를 추구하는 실리사회주의 노선에 따른 것이다.

7.1조치는 일부 경제현장에 생산성 증대를 가져오고 주민들의 소비경제를 활성화시키기도 했지만, 시장이 전국적 범위로 확산되고 계획경제가 오히려 시장에 의존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등 체제위협요소도 증가시켰다.

이를 우려한 북한은 2005년 말부터 지속적으로 개인 경작지 및 상행위 단속, 종합시장 폐쇄 발표, 화폐개혁 단행 등 시장경제 요소의 확산을 막기 위한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북한은 자력갱생을 강조하면서 제한적인 대외개방을 시도하고 있다.

북한은 사회주의권이 붕괴하고 자본주의 시장경제와의 경제관계 구축이 불가피해지자 제한적으로 대외개방을 추진해 왔다.

1991년에 나진·선봉 경제특구를 개설하고, 2002년에는 신의주특별행정구기본법, 개성공업지구법, 금강산관광지구법 등을 제정하여 경제특구의 확대를 시도했다. 그러나 신의주특구는 중국과의 갈등 때문에 추진되지 못하고, 대한민국 자본과 기술이 투입된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만이 설치되었다.

또한, 최근에는 대풍국제투자그룹 및 국가개발은행을 설립하고, 나선시를 특별시로 지정하는 등 해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북핵문제 및 이로 인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지속되는 한 국제사회의 대규모 투자가 실제로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다. 2010년 4월 북한은 금강산 지역의 우리 측 자산을 몰수하는 등 사업자 간에 정상적으로 맺은 계약과 합의를 일방적으로 부인함으로써 대북 투자 여건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하겠다.

북한이 지금의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서 경제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핵문제의 해결과 적극적인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이 주제를 다룰 때의 지도방향

북한 경제가 만성적인 경제난에 처하게 된 이유를 다각적으로 설명한다.

체제유지를 우선시한 경제개혁조치의 한계와 최근 시장통제 정책을 강화하게 된 배경 등을 이해시킨다.

마. 북한의 사회·문화**1) 북한 주민의 가치관과 생활**

북한 주민의 규범적 가치관은 집단주의이다.

북한은 사회주의체제로서 토지·자본·공장 등 주요 생산수단을 국유화·집단화해 왔으며, 외형상으로는 주민들에 대해 평등주의적 가치관을 강조해왔다. 또한, 헌법에 '하나를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고 규정되어 있을 정도로 북한 사회는 개인보다 집단을 우선시하는 집단주의 가치관을 강조해 왔다.

최근 북한 주민의 가치관에는 점차 개인주의적·자본주의적 성향이 나타나고 있다.

북한주민들은 경제난 이후 자력으로 생계를 꾸려가면서 자신과 가족의 생존을 우선시하는 가치관이 강화되고 있다. 주민들은 공장 기업소나 협동농장에서 일하는 것 외에도 장마당에서 장사를 하거나 텃밭에서 농사를 짓는 등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점차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이 약화되면서 집단주의적 가치관보다

는 물질 중심의 개인주의적 풍조가 확산되고 있다.

북한 주민이 우리 사회의 문화를 접하게 되면서 대남 인식도 점차 바뀌고 있다.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북한주민은 북한당국에 의한 사상교양 학습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을 ‘헐벗고 굶주린 불쌍한 동포’ 혹은 ‘미제의 압제에 시달리는 해방의 대상’ 정도로 이해하고 있었다. 그러나 다양한 경로를 통해 우리 사회에 대한 정보를 접하면서 대한민국의 발전상을 점차 인식하게 되었다.

경제난 이후 생계유지를 위한 유동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과거에 비해서 정보소통이 활발해지고 있다.

북한주민은 거주이전과 통행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아 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당국으로부터 통행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그러나 경제난 이후 생계유지를 위한 유동인구가 많아지면서 통행증 발급이 비교적 쉽게 이루어지고, 무허가 여행을 하는 주민도 늘어났다.

유동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정보유통이 활발해지고 대한민국 사회를 비롯한 외부세계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게 되면서 북한주민의 의식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북한여성의 생계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여성의 위상이 변화되고 있다.

북한은 표면상 남녀평등을 강조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북한여성은 사회노동과 집안일을 병행해야 하는 이중 부담과 가부장적 권위주의 아래에서 불평등한 지위에 처해 있었다.

그러나 경제난 이후 대부분의 가정에서 여성들의 경제활동 비중이 커지

면서 남성위주의 가부장적 문화가 점차 약화되고 있다.

이 주제를 다룰 때의 지도방향

북한주민의 가치관과 일상생활을 알게 하고, 경제난 이후 가치관과 일상생활의 변화가 북한체제 변화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탐색해보도록 한다.

2) 북한의 교육과 학교생활

북한 교육은 이른바 “공산주의적 새 인간 육성”이라는 명분 아래 체제 순응적 인간형을 만드는데 주안을 두고 있다.

북한 교육은 개인의 자아발달보다는 김일성과 김정일 등 지도층에 절대 복종하고 집단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던질 수 있는 인간형의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유치원과 초중등단계를 포괄한 11년제의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경제난 이후 교재 및 학용품 구입 등 각종 명목의 잡부금에 대한 부담으로 북한의 무상 의무교육은 선전과 달리 현실적으로 실현되지 못한 채 그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

북한 교육과정의 특징은 교육과 정치의 결합, 교육과 생산·노동의 결합, 교육내용의 선택권 부재 등이다.

북한은 교육을 사상혁명의 핵심 수단으로 여기므로 학교에서도 정치사상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교육과정에 노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다양한 유형의

노력동원에 참여해야 한다.

교육내용과 방법은 국가에 의해 규격화되어 하달되므로 개인의 선택여지가 거의 없으며, 정해진 내용과 방법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북한의 학교교육은 교과수업 외에 청소년 조직활동과 방과 후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청소년 조직 활동은 집단주의를 강조하는 북한체제에서 매우 중요시되고 있다. 학생들은 소학교 2학년부터 소년단, 중학교 5학년부터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에서 활동하며, 이러한 조직은 학교생활과 일상에서 학생들 스스로가 동료학생의 생활을 집단적으로 규율하고 통제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방과 후에는 음악, 체육 등 소조(동아리)에서 활동하기도 하고, 학교에서 일을 하거나 농장에 나가 일손을 돕기도 한다.

경제난 이후 북한은 정치사상 교육을 강조하면서 과학기술, 컴퓨터, 외국어 등 실용적 교육도 강화하고 있다.

북한은 경제난 이후 나타나고 있는 사상적 이완 현상을 막기 위해 정치사상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경제발전을 위해 과학기술 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IT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1990년대 후반부터 중학교에서 컴퓨터 교육을 정규과목으로 개설하고 컴퓨터 수재반도 운영하고 있다.

외국어도 북한이 중요시하는 과목이다. 특히 영어의 인기가 높아 대부분의 중학교에서 영어를 외국어 과목으로 지정하고 있다.

이 주제를 다룰 때의 지도방향

북한의 교육목적, 교육제도, 교육내용을 설명하고, 무상교육 등 북한이 선전하는 것과 실제 현실 간의 괴리를 이해시킨다.

북한의 학교와 북한학생들의 생활을 알게 하고 우리와의 차이점과 유사점을 비교해 보도록 한다.

3) 북한의 문화

북한의 문화는 “사회주의적 민족문화 건설”이라는 명분으로 전통적 민족문화를 변질시켜 왔다.

북한은 이른바 “사회주의적 민족문화 건설”을 위한 문화정책을 추진하면서 획일적인 문화를 추구해왔다.

예를 들어 북한의 명절은 전통적 민족명절 이외에도 김일성·김정일 생일, 정권수립일, 당 창건일, 헌법절 등 북한체제의 특색과 사회주의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그 결과 북한에서는 우리 민족의 고유 문화전통이 왜곡되어 사상통제의 수단으로 전락하였으며 남북 간 문화적 이질감도 심화되었다.

북한은 주민들의 사상교양 수단으로 **군중문화 활동을 독려하고 있다.**

군중문화 활동은 일반 군중들이 참가하여 진행되는 문화활동으로 사상교양 수단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강연, 담화, 보고, 해설독보, 영화감상, 방송청취, 전시회 관람, 체육경기 등의 형태로 실시된다.

이는 각급 학교나 기관과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 등에서 활동하는 아마추어 예술인으로 구성된 '예술기동선전대'와 일반 주민들이 참여하는 '예술소조'로 나누어진다.

북한에서 개인적 여가활동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다고 하나, 실제로는 노력동원, 생활총화 등 조직 활동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기 때문에 여가 활동을 하기가 쉽지 않다.

이 주제를 다룰 때의 지도방향

북한의 경우 우리 고유의 문화전통이 왜곡되어 사상통제의 수단으로 전락하였으며, 그 결과 남북한 간의 문화적 이질감이 심화되었음을 이해시킨다.

통일 이후 문화적 동질성 회복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보고, 개인적 차원에서 어떠한 노력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하게 한다.

3 통일환경의 이해

가. 국제정세의 변화

오늘날 국제사회는 새로운 정치적·경제적·사회적 불안정 요인들에 직면하고 있다.

1990년대 이래 국제사회는 세계화, 정보화, 민주화, 탈냉전 등의 세계사적 거대 조류를 경험해왔다.

이 같은 변화로부터 발생하는 여러 긍정적 결과에도 불구하고 그 이면에는 새로운 시대 환경에서 오는 불안 요인들이 존재하고 있다. 세계화의 진전에 따른 무한경쟁의 격화, 다양한 외부 문화의 유입 등이 초래하는 가치관의 혼란, 테러 및 정보전과 같은 비전통적 안보 위협의 증대, 상이한 종교·인종·문화 간의 갈등 격화 등이 바로 그것이다.

국제사회의 불안정 요인은 한반도와 동북아 환경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세계화가 진행되는 시대적 상황에서 동북아는 이념 대립의 지역에서 국익을 위한 국가 간 경쟁과 협력이 병존하는 지역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북아 국가들 간의 경쟁과 협력 관계는 점차 복잡화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한편, 미국 오바마 정부의 아태지역 중시외교와 유연대응전략이 동북아 지역에 파급효과를 자아내며 기존의 역내 질서에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중국의 경제발전과 정치대국화 추구, 러시아의 재부상, 일본의 대외관계 재

설정과 보통국가화 노력 등도 동북아 역내 정세의 유동성을 확대하는 변수가 되고 있다.

또한, 핵무기, 미사일과 같은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에 대한 우려 역시 증대되고 있다. 북한이 보유한 대량살상무기는 한반도 안보는 물론, 역내 안보에도 심대한 위협요인이 되고 있으며, 이는 한반도 통일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을 뿐 아니라 남북관계 개선에도 중대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주제를 다룰 때의 지도방향

국제질서 변화가 한반도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설명하고 한반도 문제가 동북아 및 국제 안보환경과 연계되어 있음을 주지시킨다.

북한의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살상무기 개발·보유가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에 장애요인임을 이해시킨다.

나. 통일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통일환경의 변화에 따라 우리가 풀어야 할 과제의 성격과 내용도 변화한다.

21세기 동아시아의 국제정세는 한·미동맹의 발전적 변화, 중국 및 러시아와의 협력 강화, 동북아 지역협력의 확대, 북핵문제의 우선적 해결 등과 같은 다양한 과제들을 우리에게 부과하고 있다.

우리는 변화하는 환경에 부응하는 참신한 시각과 접근 방법으로 이들 과제에 대한 효과적 대응책을 모색하여야 한다.

변화하는 통일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지혜가 요구된다.

대내외 환경의 변화는 우리에게 커다란 도전이자 기회로 작용한다. 우리는 변화하는 대내외 환경에 전략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이러한 변화가 통일 환경에 우호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이 주제를 다룰 때의 지도방향

변화된 통일환경이 우리에게 주는 기회와 도전의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도록 지도한다.

주어진 통일환경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머물지 않고 이를 능동적으로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함을 이해시킨다.

4 통일정책

가. 우리의 통일방안

우리 정부의 통일방안은 1989년 이후 보완·발전시켜온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다.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하나의 민족공동체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점진적·단계적으로 통일을 이루어 나간다”는 기조 위에서 통일과정을 「화해협력」, 「남북연합」, 「통일국가 완성」의 3단계로 설정하고 있다.

「화해협력」 단계는 남북한이 서로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가운데 분단 상태를 평화적으로 관리하면서 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의 교류협력을 통해 상호 적대감과 불신을 해소시켜 나가는 단계이다.

「남북연합」 단계는 화해협력 단계에서 구축된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평화를 제도화하고 민족공동체를 형성해 나가는 과도기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각기 대외적으로 주권을 유지하되 남북정상회의, 남북평의회, 남북각료회의, 남북공동사무처 등을 운영하게 된다.

「통일국가 완성」 단계에서는 남북한 의회대표들에 의해 마련된 통일헌법에 따라 민주적인 선거를 통해 통일정부와 통일국회를 구성하고 두 체제의 기구와 제도를 통합함으로써 완전한 통일을 이루게 된다. 통일국가는 민족구성원 모두에게 자유·복지·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되는 자유민주국가가 되어야 한다.

이 주제를 다룰 때의 지도방향

우리의 통일방안은 통일과정을 「화해협력」, 「남북연합」, 「통일국가 완성」의 3단계로 설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단계를 거치는 것이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임을 이해하도록 지도한다.

나. 역대 정부의 평화통일 노력

1970년대 초 남북대화가 시작된 이래 정부는 평화통일을 이루어 나간다는 입장에서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오고 있다.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목표는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통해 궁극적으로 평화적 통일을 이루는 데 있다.

정부는 북한의 대남도발을 억제하는 한편,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을 이루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1971년 8월 우리측의 제의에 따라 분단 26년 만에 남북적십자회담이 개최되면서 인도적 분야에서부터 남북대화가 시작되었다. 이후 고위 당국자간의 비공개 접촉과 방문을 통해 1972년 7월 4일 분단 이후 최초의 남북간 합의문서인 ‘7·4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었다. 이 성명에서 남북은 ‘자유, 평화, 민족대단결’이라는 통일 3원칙에 합의하였다.

제4공화국 정부는 1973년 6월 ‘평화통일 외교정책에 관한 특별선언’을 발표하여 “통일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북한과 함께 유엔에 가입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천명하였다. 이후 제5공화국 정부는 1982년 1월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을 발표하고, 2월에는 서울·평양간 도로 연결, 이산가족 편지교류 및 상봉, 설악산-금강산 자유관광지 개

발 등을 포함한 20개항의 구체적 시범사업 실천을 제안하였다.

1984년 9월에는 우리측이 북한의 대남 수재물자 제공 제의를 받아들이고, 11월에는 남북경제회담, 적십자회담, 국회회담, 체육회담 등 일련의 회담이 성사되었으며, 1985년 9월에는 남북이산가족 고향방문 및 예술공연단 교환방문이 성사되었다.

제6공화국 정부는 1988년 ‘7·7 선언’을 통해 적극적 남북대화 추진 등 북방정책을 도모하고 남북기본합의서를 체결하였다.

제6공화국 정부는 1988년 7월 7일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을 발표하였다. 7·7선언의 기본 취지는 남북이 서로를 경쟁이나 대결의 상대로 보지 않고 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해 협조하며, 분단의 원인이었던 냉전체제의 극복을 위해 대한민국은 중국과 소련 및 사회주의 국가와 관계 개선을 추진하고 북한이 미국, 일본과 관계를 개선하여 국제사회에서 고립되지 않도록 협조한다는 것이다.

이후 7·7선언을 통한 남북 교류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내의 법과 제도 정비에 나서 1990년 8월 남북교류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어 우리 국민, 기업, 단체 등의 대북접촉을 위한 기본적인 제도가 마련되었다. 또한, 남북교류협력을 지원하고 촉진하기 위한 ‘남북협력기금법’이 같은 날 동시에 공포됨으로써 남북 간 교류협력에 탄력이 붙게 되었다.

한편, 1990년 9월에는 남북한의 총리를 수석대표로 하는 공식적인 남북 고위급회담이 개최되고, 이후 1992년 2월에는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이 채택되었다.

남북기본합의서는 서문과 함께 제1장 남북화해, 제2장 남북불가침, 제3장 남북교류·협력, 제4장 수정 및 발효 등 총 4장 25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통일을 한민족의 공동번영을 위한 과정으로 전제하고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통일을 향한 기본 틀을 제시하였다.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1980년대 중반 이후 점증하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 의혹에 대한 우리 정부의 해결 노력의 일환으로서 북한이 핵안전조치 협정에 서명하고, 국제사찰을 회피하지 않고 핵을 포기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었다.

1989년 9월에는 동구의 사회주의 국가들이 체제전환을 시도하는 변화된 국제환경에 발맞추어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발표하였다.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여러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남북한이 하나의 민족공동체임을 확인하고, 정치적 통합 여건이 성숙되면 단일 민족국가를 이룰 수 있다는 것으로 민족통일을 통해서 국가통일까지 실현한다는 것이다. 자주·평화·민주의 3원칙 아래 우선 남북대화를 통해 신뢰를 회복하고, 이어 남북연합 단계를 거쳐 완전한 통일국가를 완성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1993년에 출범한 문민정부는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발표하였다.

‘문민정부’는 남북 정상회담 추진의지를 천명하는 등 적극적 대화를 모색하면서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보다 발전시킨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발표(1994년)하였다.

이 통일방안은 남북이 같은 민족으로서 경제·사회·문화공동체를 회복·발전시켜 새로운 민족공동체를 형성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정치적 통합, 즉 1민족 1국가 1체제 1정부의 통일국가를 완성한다는 것이다. 문민정부 이후 역대 정부는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계승하고 있다.

한편, 문민정부 출범 초기에 제1차 북핵 위기가 야기되면서 남북관계가 위기국면으로 치달게 되었다. 이 같은 상황을 타개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1994년에는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였으나 회담 직전 김일성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무산되었다.

1998년 출범한 국민의 정부는 ‘대북 화해협력정책’을 추진하였다.

‘국민의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통일의 달성보다는 남북관계 개선이 우선적으로 실천되어야 한다는 시각에서 일명 햇볕정책이라는 ‘대북 화해협력 정책’을 추진하였다.

2000년 6월에 개최된 남북 정상회담에서 남북한의 두 정상은 ‘6·15 남북공동선언’에 서명하였다. ‘6·15 공동선언’은 통일문제, 이산가족과 비전향 장기수 문제, 경제협력, 당국 간 대화 및 김정일 위원장 답방 등에 대한 남북한 간의 합의를 담고 있다. 그러나 남북정상회담 추진과정이 투명하지 못했다는 점과 함께 6·15 공동선언문 속의 ‘우리 민족끼리’의 협력과 ‘낮은 단계의 연방제’ 부분은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였다.

남북 정상회담 이후 다양한 분야에서 남북 당국 간의 대화가 진행되었다. 장관급회담, 국방장관회담, 적십자회담, 경제협력추진위원회 등 대화가 진행되면서 남북한 간의 실질적 문제들이 논의되고 실천 방안들이 모색되었다. 이 시기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개성공단 건설, 이산가족 상봉, 부산 아시안게임 및 대구 유니버시아드대회에 북측 선수단 참가 등 다방면에 걸쳐 남북 간 교류협력이 양적으로 크게 증대하였다.

그러나 이같은 남북교류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지속적으로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통해 안보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1998년 8월 대포동 미사일 시험 발사를 비롯하여 1999년 6월과 2002년 6월에는 북한 경비정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침범으로 인한 남북 해군 사이의 교전(제1·2

차 연평해전), 2003년 1월 북한의 NPT 탈퇴 선언 등 남북한 간 군사적 긴장이 조성되고 제2차 북핵 위기가 발발함으로써 남북관계에 실질적 진전을 이루는 데는 한계를 보였다.

2003년 출범한 참여정부는 ‘평화번영정책’을 추진하였다.

참여정부는 한반도의 평화증진과 남북한 및 동북아의 공동번영을 목표로 ①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② 상호신뢰 우선과 호혜주의 ③ 남북 당사자 원칙에 기초한 국제협력 ④ 국민과 함께하는 ‘평화번영정책’을 제시하였다.

2007년 10월에 개최된 남북 정상회담에서 남북 정상은 ‘남북관계발전 및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에 합의하였다. 선언문을 통해 남북은 상이한 체제에 대한 상호존중을 토대로 정치, 군사, 경제, 사회문화, 인도주의, 외교 등의 영역에서 통일을 위한 공동사업들을 추진할 것에 합의하였다. 그러나 북핵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북한의 변화가 미미한 가운데 합의·추진된 남북 간 교류와 협력, 대북지원 등은 국민적인 합의와 지지를 이끌어내는데 크게 미흡하였다.

이 주제를 다룰 때의 지도방향

남북한 간 갈등과 적대 구조 속에서도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통일기반을 다지기 위한 역대 정부의 노력을 긍정적·부정적 평가를 곁들여 균형 있게 설명한다.

다.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

이명박 정부는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요구, 남북관계 변화, 북핵문제 관련 한반도 정세 변화 등을 반영하여 ‘실용과 생산성’에 기초한 ‘상생·공

영의 남북관계 발전'을 추구하고 있다.

지난 정부의 대북정책은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북한의 변화를 촉진하는데 일정 부분 기여해 왔다. 그러나 적극적인 교류협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론 분열과 일방적 대북지원 등 국민적 우려와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특히 북한의 미사일 발사, 핵실험으로 인해 기존의 정책에 대한 비판이 고조됨에 따라 대북정책은 다른 어느 분야보다도 국민적 합의의 바탕위에서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남북관계 발전 및 남북관계의 역학 구도도 변화하고 있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발전을 통해 우리의 국력이 신장된 가운데 북한 경제의 대남 의존도가 증가하였고, 북한 주민의 대남의식도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남북관계의 변화를 견인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한편, 북핵문제가 한반도 정세를 가름하는 주요 변수가 됨에 따라 6자 회담이 북핵문제 해결의 틀인 동시에 향후 한반도 정세의 중요한 고려요소로 등장하였다. 이에 따라 북핵문제 해결 과정과 관련한 정세의 흐름을 정확히 읽고 한반도에서 새로운 변화를 능동적으로 창출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한반도에서 새로운 변화의 기회를 적극 활용하여 상생과 공영의 남북관계를 구축하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해 나가고자 한다.

우리 정부의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은 평화공동체, 경제공동체, 행복공동체 형성을 통하여 한반도 평화통일의 실질적 토대를 확충해 나가고자 한다.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은 남북이 윈-윈(win-win)하면서 공동번영을 지향하는 남북관계 발전을 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 간 군사적 신뢰 구축, 그리고 긴장완화를 실현하여 '평화공동체'를 건설하

고, 북한의 발전과 국제사회의 참여를 돕고, 남북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경제협력을 통해 '경제공동체'를 이룩하며, 인도적 문제를 해결하고 남북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남북 7천만 모두의 행복을 추구하는 '행복공동체'를 실현하여 한반도 평화통일의 실질적 토대 확충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북한 핵문제 해결과 남북한의 상생과 공영을 실현하기 위해 「비핵·개방·3000」을 제시하였다.

「비핵·개방·3000」은 북한의 핵 폐기 결단을 촉진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동시에 남북한 공동번영의 길을 모색하고자 하는 일대 프로젝트이다.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서 북한이 핵 폐기의 결단을 내린다면 한국은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이 10년 내에 3,000달러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북한의 핵 폐기 진전 상황에 따라서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의 경제 재건 및 주민생활 개선을 위한 5대 분야(경제·교육·재정·인프라·생활향상)에 걸친 '포괄적 패키지 형태의 지원'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특히, 「비핵·개방·3000」은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의 개념 안에서 구체적인 추진 전략을 지니고 있으며, 그 자체가 하나의 큰 열개로서, 세부 내용은 향후 남북대화를 통해서 적절하게 채워나가게 된다. 큰 틀에서 보면 핵문제 해결의 진전에 따라 단계적으로 북한을 도와주는 실천계획을 뜻하는 한편, 북한의 비핵화 이전이라도 인도적 지원과 '삶의 질 향상' 프로그램 등을 제공할 수 있으며, 비핵화의 단계에 맞추어 대북지원을 확대하여 북한의 핵 포기를 유도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또한, 「비핵·개방·3000」은 통일비전을 포함하고 있다. 「비핵·개방·3000」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남북 간 인적·물적 교류가 심화되면서 사실상 남북 경제공동체가 실현될 것이다. 북한이 1인당 국민소득 3천 달

러 수준에 도달하면, 통일비용도 줄이고 사회적 충격을 흡수하면서 안정적인 평화통일을 이룩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이다. 1인당 국민소득이 3,000달러가 된다는 것은 중산층의 성장을 뜻하며, 북한이 이 수준에 도달할 때 남북 간 통일에 관한 논의도 더욱 활성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비핵·개방·3000』을 실현하기 위하여 2009년 8.15 경축사를 통해 북한의 핵무기 포기과 남북 간 재래식 군비 감축, 그리고 북한의 경제발전을 위한 국제 협력프로그램 등을 골자로 한 「한반도 신 평화구상」을 제시하고, 9월에는 북핵 문제의 해결 접근 방식으로 ‘그랜드 바겐’(Grand Bargain)을 제의하였다. ‘그랜드 바겐’은 6자회담을 통해 북핵 프로그램의 핵심부분 폐기와 동시에 북한에 대해 확실한 안전보장과 국제지원을 본격화하는 일괄타결안이다.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은 실용과 생산성, 원칙에 철저하되 유연한 접근, 국민 합의, 남북협력과 국제협력의 조화라는 4가지 원칙 아래 추진한다.

첫째, 실용과 생산성에 입각하여 국민이 동의하고 국민이 원하는 성과를 내는 정책을 추진하고, 북한주민의 삶 개선과 북한의 발전적 변화를 촉진해 나간다.

둘째, 북핵 폐기 원칙은 철저히 견지하여 원칙있고 성과있는 대화를 추진하되, 그 접근방식은 유연하게 대처해 나간다.

셋째,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투명하게 정책을 추진하고, 초당적인 협력을 상시화하며, 생산적이고 투명하게 남북협력기금을 운용해 나간다.

넷째, 남북관계 개선과 함께 유관국과의 조율을 통해 국제사회의 신뢰와 협조를 확보하고 보편적 가치에 입각한 남북관계 발전을 지향해 나간다.

향후 대북정책 추진방향은 원칙 있는 남북관계 발전 추구, 생산적 인도주

의 실현, 미래준비 통일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우선, 대북기조를 일관되게 견지해 온 그간의 성과를 토대로 남북관계의 본질적 문제인 북핵문제 해결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 2009년 8.15 경축사에서 제시한 ‘한반도 신 평화구상’의 이행방안을 구체화한다.

둘째, 남북 간 모든 문제는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해결한다는 원칙을 견지하면서 투명하고 생산적인 회담문화를 정착시키고 이를 통해 정치적 신뢰를 쌓아가도록 한다.

셋째, 투명하고 질서 있는 남북교류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북한을 방문·체류하는 우리 국민의 신변 보호를 위해 국제적 수준의 신변안전 보장 장치를 마련한다.

넷째, 인도적 문제는 생산적이면서도 창의적으로 해결함으로써 가시적 성과를 창출한다. 국군포로, 납북자,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인도적 대북지원은 북한주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한편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는 일자리 중심의 지원 체계를 강화한다.

다섯째, 선진민주통일국가를 만들어 가기 위한 국민의지를 결집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통일교육을 강화하며, 통일한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 확대 노력을 강화한다.

이 주제를 다룰 때의 지도방향

한반도 평화통일 달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의 비전과 추진원칙, 중점추진과제 등을 설명한다.

5 통일을 위한 과제

통일 미래 비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확산시켜 나가야 한다.

통일은 국가적 차원에서의 이해관계에 그치지 않고 개인적 차원의 이해와도 직결되는 우리 시대의 과제이다. 즉, 통일문제는 특정 집단이나 계층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문제이기도 함을 이해시켜야 한다.

통일이 가져오는 이익에 대해 권리를 행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통일을 실현시키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의무와 책임에 대해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특히 통일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사회적 비용 부담의 불가피성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통일교육이다. 올바른 통일교육을 통해 남북문제를 둘러싼 우리 내부의 갈등을 줄여 나가는 한편, 통일 미래 비전과 그것을 실현할 방법 등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공감대를 형성·확산시켜 나가야 한다.

우리 모두가 통일문제에 대한 열정과 관심을 가지고, 올바른 방향에서 함께 노력해 나갈 때 우리가 바라는 통일을 성취할 수 있다.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민주시민의식을 더욱 성숙시켜야 한다.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는 사회 구성원들이 자신들의 권리만큼이나 사회적 책임감을 자각하고 타인에 대해서도 배려할 것을 요구한다.

통일한국으로의 출발점은 사회 구성원간의 차이를 민주적 의사소통을 통해 해결해 나가는 민주주의의 실천으로부터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우리 사회의 현안들조차도 민주적 대화와 타협을 통해 평화적으로 풀지 못한다면 남북한의 차이를 극복하는 통일의 과제는 더욱 성공하기 어렵다. 우리 사회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들을 배려하고 이해하며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역량을 갖추어 나가야만 향후 남북한 주민들의 조화로운 통합도 기대할 수 있다.

북한동포의 이질성을 감싸 안으려는 자세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민주시민의식의 연장선상에서 비롯된다. 또한 북한동포의 행복을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문제로 접근하여야 한다.

또한 통일에 이르는 과정뿐 아니라 통일 이후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먼저 우리 자신의 자유민주주의적 가치와 제도를 성숙시켜야 한다. 북한 동포들이 동경하고 따를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와 제도가 우리 사회에 뿌리내릴 때 북한 동포들에게 자유민주주의의 진정한 가치를 이해시키고 수용하도록 설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국가 안보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북한 핵문제는 한반도의 안보 불안을 초래하고 다른 분야의 남북관계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요인이다.

따라서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서는 북한 핵문제를 우선 해결하고 이와 함께 남북 간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진전시켜 나가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방향에서 현재의 정전상태도 항구적인 평화상태로 전환시켜 나가야 한다.

그러나 현 단계에서는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스스

로 국가안보를 확고히 지켜나갈 수 있는 튼튼한 안보의식과 역량을 갖추어 나가야 한다.

원칙과 기본을 지키는 생산적인 남북교류협력을 통해서 남북관계를 실질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남북 교류협력의 확대는 남북한 간의 불신과 적대 관계를 해소하고 신뢰구축을 통해서 한반도에 상생과 화합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촉매 역할을 한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등 다방면에서 남북한 간 인적, 물적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함으로써 남북한 간 상호이해를 증진하고, 궁극적으로 민족의 동질성 회복과 상생·공영하는 관계를 도모하여야 한다.

경제, 사회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류협력이 미진한 정치, 군사 분야의 교류협력을 촉진하여 균형적인 남북관계 발전을 이룩해야 한다.

남북교류협력은 양적인 확대뿐만 아니라 내실화를 기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일시적 성과에 급급하기보다는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쌓아가는 노력과 인내가 요구된다.

통일의 효과적 달성을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확보해야 한다.

한반도 주변국 등 국제사회의 적극적 지지와 협력은 통일의 달성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한반도 주변국들과 협력관계를 진전시켜 나가면서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이들의 지지와 협력을 확보해야 한다.

아울러, 통일한국이 동북아는 물론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는 확신을 주변국들에게 심어줄 수 있어야 한다.

이 주제를 다룰 때의 지도방향

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한 과제로서 통일미래 비전, 자유민주주의 가치, 국가안보 역량, 남북관계 개선, 국제사회 지지 등을 강조하고, 현 단계에서의 생산적이고 실질적인 노력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한다.

통일한국의 달성을 위한 노력을 국가적 차원, 사회적 차원, 그리고 개인적 차원에서 구분하여 이해하고, 특히 개인적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를 주지시킨다.



IV

학교급별 및 교육과정별 권고사항

1. 학교급별 권고사항
2. 교과별 권고사항
3. 정규과정 외 교육활동에 관한 권고사항
4. 창의적 체험활동에 관한 권고사항
5. 사이버 통일교육에 관한 권고사항
6. 시·도교육청에 대한 권고사항

1 학교급별 권고사항

학교 통일교육은 앞에서 제시한 통일교육 내용체계를 바탕으로 하여 학생들의 발달단계와 학습과정에 적합하게 실시되어야 한다.

또한, 북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정확성, 시사성 그리고 신뢰성 있는 정보와 자료를 활용하여야 한다.

가. 초등학교

- (1) 초등학생들에게는 개념이나 기능 중심의 통일교육이 아니라 상황 중심(또는 생활 중심), 바람직한 가치 및 태도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 (2) 학생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정서적 접근과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흥미를 북돋우는 접근을 중요시해야 한다. 즉, 초등교육 단계의 학생들에게는 통일이 되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긍정적인 것들, 예컨대, 올림픽이나 월드컵에서 우리의 경기력 상승, 북한에 있는 고구려의 문화 유적, 북한 지역으로의 여행뿐 아니라 경의선을 통한 유럽 배낭여행도 가능한 점 등 개개인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을 강조하여 통일의 필요성을 인식하도록 한다.
- (3) 분단의 아픔에 대한 감정이입을 통해 분단 극복의 문제를 정서적인 차원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분단으로 인해 고통을 받는 사람들의 문제가 우리 모두의 문제임을 느끼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4)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학생들은 북한주민이 우리와 같은 민족으로서 언어와 역사, 전통을 공유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우리나라가 원래 하나의 국가였으나 국제적 요인과 민족 내부적 요인에 의해 분단국가 가 되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 (5) 분단의 고통에 대해 공감하며 나아가 한민족으로서 통일을 이루려는 마음과 통일 의지가 내면화될 수 있어야 한다.

나. 중 · 고등학교

- (1) 중 · 고등학교 단계는 논리적이고 추상적이며 체계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시기이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는 학생들이 통일 · 북한관련 문제에 대한 객관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이에 기초하여 통일문제를 종합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인지적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2) 중학교 통일교육에서는 안보의 중요성, 외국의 통일사례, 우리나라 역사 속의 통일 사례, 현재 우리나라의 통일 노력, 남북분단의 원인과 폐해, 분단의 역사적 전개과정, 북한의 지배체제, 이데올로기 및 사회 · 경제 · 문화 · 교육 분야의 주요 특징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 한다.
- 통일의 필요성을 개인적 차원은 물론, 민족사적, 인도적, 국제적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 독일, 베트남, 예멘 등 과거 분단국의 통일 사례 연구를 통해 통일준비 방법, 바람직한 통일국가상 등을 탐구하도록 한다.

- (3) 고등학교 통일교육 과정에서는 북한사회에 대한 이해를 심층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통일문제를 종합적·체계적·논리적인 관점에서 조망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야 한다.
- 먼저 안보의 중요성을 재인식시키고, 학생들의 통일·북한관련 지식을 체계화시켜야 한다.
 - 아울러 통일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문제들을 예상해 보고,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모색하도록 지도한다.
 - 북한이해의 측면에서는 북한에 대한 인식의 이중성, 북한사회가 지향하는 이념과 체제, 북한사회 통합의 원리와 주민 및 학생들의 생활과 가치관, 북한의 문화예술과 교육 등에 대한 균형적 이해를 가지도록 한다.
 - 고등학교 고학년에서는 정치적·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학교 밖의 통일 문제를 수업 상황에서 함께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
- (4)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체계적인 통일·북한관련 지식을 토대로 통일 문제를 한반도라는 시각을 넘어 동북아와 국제정세와 관련하여 종합적인 시각에서 조명할 수 있어야 한다.

2 교과별 권고사항

가. 도덕과

- (1) 도덕교과는 다른 교과에 비해 통일·북한관련 문제를 가장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다루고 있는 교과로서, 학교 교육 과정에서 다른 교과 통일교육의 기초가 되는 교과로서의 특징을 지닌다.
- (2) 도덕과는 북한 및 통일문제 전반에 대해 도덕적 가치와 인도주의, 그리고 인류 보편적 가치(인권·자유·평등 등)에 입각하여 학생 스스로 판단하고 평가하며 또한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태도를 함양하여야 한다.
- (3) 북한이탈주민의 우리 사회 적응문제는 남북한 사회통합의 중요한 과제이고 통일의 예비 실험적인 의의를 지닌다는 것을 강조하며 이들의 삶을 이해하고 이들이 우리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을 인식시킨다.
- (4) 도덕과에서는 분단의 원인과 상황을 종합적으로 다루면서, 우리나라와 주변 국가 간의 국제 관계적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한다.
- (5) 도덕과는 가치와 이념 및 미래상을 다루되, 이러한 추론이 가능할 수 있도록 북한 사회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언어, 사상, 가치규범체계, 법의식 등)를 할 수 있도록 한다.

- (6) 도덕과는 사실을 중요시하는 다른 교과와는 달리 가치의 문제를 중요시하므로, 전쟁의 폐해와 위험, 바람직한 통일의 길, 올바른 북한 이해, 통일 후 지향해야 할 가치, 통일을 위해 갖추어야 할 덕성 등에 강조점을 두어야 한다.

나. 사회과

- (1) 사회과 교육은 지리, 역사, 일반사회를 관련시킨 통합적 관점으로 사회현상을 이해하도록 하는 행동 영역의 목표를 두고 있다. 따라서 사회과 교육에서는 남북한의 교역량을 비롯한 객관적 이해 자료의 내용을 지리적·사회적·경제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남북한의 근현대사를 통해 통일·북한관련 문제를 이해하도록 한다.
- (2) ‘인간과 사회’ 영역에서는 남북한 사회의 정치·경제·사회·문화 현실에 대한 기본적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특히 북한의 지배체제, 이데올로기 및 사회경제적 상황의 주요 특징들을 다루어야 한다.
- (3) ‘인간과 지리’ 영역에서는 북한 지역의 위치적 특성과 교통망, 자원분포 등을 설명하고, 이를 통해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지경학적(地經學的)으로 동북아 경제축의 중심인 한반도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 (4) ‘인간과 시간’ 영역에서는 우리 근·현대사의 주요 사항들, 예를 들어 실학사상, 개화운동과 동학농민운동, 일본제국주의 침략과 강점, 3·1독립운동, 제2차 세계대전과 일본의 항복, 광복과 남북분단 등을 가르쳐야 한다. 특히 공산주의를 다룰 때에는 소련과 중국의 팽창

정책과 그것으로 야기된 남북분단과 6·25전쟁 등이 함께 설명되어야 한다.

광복 이후의 역사는 특히 고학년에서 다루어지는데, 미·소 연합군의 점령으로 인한 한반도 분할,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립, 6·25 전쟁과 남북분단, 남북 긴장관계 속에서 냉전체제의 형성 및 그 의미, 1970년대 초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긴장완화 노력을 다루어야 한다.

다. 국어과

- (1) 국어과 교육에서는 문학적 차원에서 남북한의 문학과 언어의 특성에 대해 이해하고 그 동질성과 차이점을 이해하도록 한다.
- (2) 남북한 언어비교를 통한 이질성의 확인에 머무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남북한 언어의 이질적인 측면이 지나치게 부각되어 통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초래되지 않도록 한다.
- (3) 통일에 대비하기 위해 남북한 언어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한다.

라. 예체능과

- (1) 음악과, 미술과, 체육과에서도 남북문제 및 북한과 관련된 주제들이 다루어져야 한다. 북한의 음악·미술·체육에 대한 이해, 남북한 간 예체능 분야의 이질성과 동질성 인식 등을 통해 남북한이 공유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을 탐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2) 특히, 음악과와 미술과에서 남북한의 문예정책에 대한 이론적·제도적 측면보다는 남북한의 미술작품이나 음악을 직접 감상해 봄으로써 동질성과 이질성을 정서적으로 느끼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정규과정 외 교육활동에 관한 권고사항

- (1) 학생들의 통일실현의지와 통일에 대한 관심을 고양하기 위하여 학생회, 계발활동, 축제, 수학여행, 현장 체험 학습, 봉사활동 등 특별활동과 학교 행사 활동을 통일교육과 연계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 (2) 학생들의 활동공간인 계발활동은 통일문제를 학생들의 관심사로 끌어들이어 일상 생활에서 체험과 실천의 대상이 되게 할 수 있다. 능동적인 계발활동은 감수성이 예민하고 호기심이 많은 학생들에게 적절한 동기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통일 관련 시사반, 신문반, 방송반, 연극반 등과 같은 계발활동을 적극 권장하도록 한다.
- (3) 학교행사에서는 통일·북한관련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통일가요제, 통일축제, 통일 사이버 문예대회 등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도록 한다.
- (4) 학생회를 중심으로 북한 어린이 돕기 운동, 북한이탈주민 가족 돕기 운동 등을 전개하여 학생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북한주민을 동포이자 이웃으로서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 (5) 현장체험학습 활동으로 분단의 상징적 지역이나 통일 의지를 다질 수 있는 장소, 즉 남북출입사무소, 판문점, 통일전망대, 통일관 등을 견학하도록 함으로써 분단이나 통일문제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
- (6) 학생들의 수련활동도 단순히 심신 수련의 차원을 넘어 통일교육의 장으로서 활용할 수 있으므로 학교의 교과교육 차원에서 담아내기 힘든 통일교육 활동들을 체험할 수 있게 한다.

4 창의적 체험활동에 관한 권고사항

- (1) 창의적 체험활동시간에는 통일·북한관련 주제를 탐구하는 활동이나 소집단 공동연구 등을 통해 통일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2) 자기 주도적 학습에서 통일·북한관련 주제를 다룰 때에는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을 유발할 수 있는 주제(예컨대, 북한 학생의 여가생활 등)나 학생들이 관심을 두는 시사성 있는 주제를 선정한다.
- (3) 학생들이 창의적 체험활동시간에 통일·북한관련 주제를 다룰 때에는 반드시 자율적 토론과 대화가 이루어지도록 여건을 조성한다.
- (4) 토론의 결과는 가능한 범위에서 학생들의 실생활 속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 내용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5) 학생들이 북한의 실상을 이해하는 데 현실감을 부여하기 위해 탈북 청소년 등 북한 이탈주민을 초청하여 북한의 실상에 대한 설명을 듣고 대화하는 기회를 마련한다. 북한이탈주민을 통일교육에 초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북한이탈주민후원회 (02-591-3822~5)에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5 사이버 통일교육에 관한 권고 사항

가. 사이버 통일교육의 필요성

인터넷의 보급은 교실이라는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극복하도록 함으로써 교육 환경을 크게 변화시켰다. 이에 따라 IPTV와 같이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기법이나 콘텐츠도 풍부하고 다양해지고 있다. 또한 청소년들은 정보화 기기의 접근과 활용에 적극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통일교육의 효과를 높이고 늘어나는 교육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이버 통일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나. 사이버 통일교육의 콘텐츠 활용 방법 및 유의점

- (1) 사이버 공간에는 무한한 정보와 자료가 존재하지만, 정보의 신뢰성과 객관성은 검증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따라서 학생들이 사이버 공간에서 북한에 관한 자료를 접할 때,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도록 정보를 적절히 여과하여 활용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북한의 제도와 정책들은 겉으로 드러난 것과 실제의 시행 간에 차이가 크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시켜야 한다.
- (2) 이념적 편향성이 강하게 드러나는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북한 및 통일 관련 자료들에 대해서는 학생들에게 접근을 제한하거나 충분한 사전 설명이 제공되도록 하여야 한다.

- (3) 북한주민의 생활이나 최근의 북한 관련 자료들은 객관적 검증이 쉽지 않은 특성이 있으므로 통일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신뢰성 있는 기관의 자료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점에서 통일교육원 홈페이지「자료방」에 게시된 콘텐츠의 활용을 권고한다.

다. 바람직한 사이버 통일교육 방향

- (1) E-learning(사이버 학습), U-learning(유비쿼터스 학습) 기반 학습 사회가 도래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교육 환경을 고려하여 통일교육 관련 자료 탐색과 학생들의 과제 작성, 수업 과정에서 웹 기반 통일교육 방법을 적극 활용하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 (2) 통일부 및 통일교육원의 자료를 기반으로 하면서 각 대학이나 연구소, 그리고 통일 및 대북 민간 기구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영역에 따라 접근할 수 있도록 하되, 지도 교사가 사전에 검증한 후 학생들이 접근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한다.

6 시 · 도교육청에 대한 권고사항

청소년들에게 통일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올바른 통일관을 심어주는 통일교육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의 관심은 낮은 편이다.

학교 현장에 통일교육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학교통일교육을 활성화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 · 도 교육청의 적극적 역할이 중요하다.

가. 학교통일교육 내실화

시 · 도 교육청은 통일교육기본계획과 통일교육지침서에서 제시된 통일교육이 학교 실정에 맞게 구체화되어 일선 학교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시 · 도 교육청은 매년 학교통일교육계획 수립 시 관내 학교통일교육 수요와 자원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통일교육의 목표를 매년 상향 조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

특히 2010년 교육과정 개편으로 늘어난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별도의 통일교육 시간을 확보하고, 통일교육전문강사를 활용하여 통일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원한다.

나. 통일교육 인력 및 예산 지원 강화

통일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과도한 업무 부담에 시달리고 있는 시 ·

도교육청의 통일교육 담당관들이 본연의 임무인 학교통일교육 지도에 보다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학교통일교육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각 시·도교육청의 예산 중 일정 비율을 통일 교육에 할당할 필요가 있다.

시·도교육청의 통일교육 관련 예산은 각급 학교의 일상적인 통일교육 지원과 교사연수뿐만 아니라, 학교 통일교육용 교재 개발 및 보급, 통일문화행사 개최 등을 포괄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한다.

다. 교원연수원을 통한 통일교육 강화

학교통일교육 내실화를 위해서는 교원들의 통일교육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교원연수원에서는 연수계획 수립 시 통일교육지원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일교육 시수를 반영하여야 한다. 또한 교원연수 시 도덕·사회과 교사 중심으로 통일교육심화과정 운영을 권고한다.

특히 학교장의 관심이 통일교육 활성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한 연수프로그램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부 록

통일교육 현장 체험지 안내

통일교육원 홈페이지 주요 자료 안내

북한 및 통일문제 관련 웹사이트

북한 및 통일문제 관련 방송프로그램

통일교육지원법

통일교육지원법 시행령

통일교육 현장 체험지 안내

통일관

통일관은 지역 주민과 청소년들이 각종 통일관련 전시물과 영상자료 등을 통해 북한의 실상과 남북관계 현황, 통일환경 및 안보현실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통일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돕는 통일체험학습의 장이다.

통일관은 현재 전국 13개 지역에 설치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나 민간단체, 기업체, 학교 등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정부는 통일관에 각종 전시자료, 북한관련 특수자료 및 영상자료 등을 지원하고 있다.

■ 전시자료

- 통일노력의 발자취와 오늘의 남북관계를 알려주는 패널 자료
-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 등 분야별 실상 자료
- 북한위성TV 및 영화 등 영상자료, 노동신문 등 간행물 자료(8곳)
- 북한 생활용품(오두산, 서울 등 2곳은 소학교와 살림집 모형도 전시)

■ 관람시간

- 3월~10월 09:00~18:00, 11월~2월 09:00~17:00
※관람시간은 각 지역 통일관의 사정에 따라 1~2시간 정도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각 통일관에 따라 일/월/화요일, 명절 등에 휴관, 또는 연중무휴 개관

■ 전국 통일관 현황

통일관명	위 치	운영주체	연락처	휴관
서 울	서울시 구로구 공동	서서울생활과학고등학교	02) 2613-5556	격주 토, 휴일
인 천	인천 남구 송의4동 수봉공원내 자유회관	자유총연맹 인천지회	032) 868-0113	월
오 두 산	경기 파주시 탄현면 오두산통일전망대	(주)동화진흥	031) 945-3171	무휴
고 성	강원 고성군 현내면 통일전망대	(주)통일전망대	033) 681-0885	무휴
양 구	강원 양구군 해안면 편치불지구	양구군	033) 481-9021	월
철 원	강원 철원군 동송읍 철이삼각지	철원군	033) 450-5046	화, 명절
대 전	대전 유성구 도룡동 엑스포과학공원	대전엑스포과학공원	042) 866-5065	월
충 남	충남 공주시 웅진동	자유총연맹 충남지회	041) 881-1212	월, 명절
청 주	충북 청주시 상당구 청주랜드	청주시 청주랜드관리사업소	043) 200-4710	월, 명절
광 주	광주 서구 화정2동 화정근린공원	통일교육위원광주협의회	062) 385-1301~2	월
부 산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 자유회관	자유총연맹 부산지회	051) 808-7960~3	무휴
경 남	경남 창원시 용지동 자유회관	자유총연맹 경남지회	055) 282-2332~3	일
제 주	제주시 일도2동 탐라자유회관	자유총연맹 제주지회	064) 751-0191~2	일

오두산 통일전망대

한강과 임진강이 만나는 곳에 위치한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는 임진강 너머 북한 지역이 바라다 보인다. 황해북도 개성시 관산지역의 주택과 각종 시설, 도로와 논밭, 주민의 농사짓는 모습 등을 직접 관찰할 수 있다.

이 전망대 내에 있는 통일관에서는 북한의 실상과 통일문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볼 수 있다.

북한의 정치, 군사, 경제, 교육 등 사회 각 분야와 의·식·주 생활에 대한 설명 자료와 함께 교과서, 신문, 각종 생활용품 등 북한 물품들이 전시되어 있다. 북한의 공연, 만화영화, TV 등의 영상물도 상영된다.

또한 통일노력의 역사와 현황도 살펴볼 수 있으며, 북한에 위탁가공으로 생산한 제품들과 개성공단에서 북한 근로자들이 생산한 제품들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 관람시간 (입장가능 시간)

- 11월~2월 : 오전 9시~오후 4시 반
- 3월, 10월 : 오전 9시~오후 5시
- 4월~9월 : 오전 9시~오후 5시 반
- ※공휴일에는 30분 연장
- ※기상조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교통편

서울(2호선 합정역)에서 전망대 입구의 통일동산까지 가는 광역버스가 있으며, 버스종점에서 전망대까지 셔틀버스가 운행된다.

■ 참조/문의

- 웹사이트 : www.jmd.co.kr
- 전화 : 031) 945-3171, 3173, 2390

도라산역

도라산역은 경의선의 남측 최북단 역으로, 비무장지대(DMZ) 남방한계선에 인접해 있다. 파주시 장단면에 있는 이 역으로부터 개성공단 입구에 위치한 북한의 판문역까지 거리는 7km, 개성역까지는 17km이다.

이 역의 선로와 승강장은 국내선과 국제선으로 구분되어 있다. 국제선은 북한 왕래에 이용되며, 향후에는 북한을 거쳐 중국, 러시아와 유럽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도라산역은 2000년 남북 합의에 따라 경의선 철도 연결 공사가 시작된 후 2002년 4월에 개통되었다. 이후 2003년 6월에 남북 철도 궤도의 연결, 2007년 12월부터 문산역~판문역 간 정기화물열차 운행이 이루어졌다(화물열차 운행은 2008년 12월부터 중단).

경의선 철도로 개성공단 등을 왕래하는 인원과 화물은 도라산역에 있는 경의선 철도 남북출입사무소에서 출입경 심사, 통관, 검역 등을 거친다.

도라산역 인근에는 경의선 도로 남북출입사무소, 물류센터, 도라산 평화공원, 도라전망대 등이 있다.

도라전망대

파주시 군내면에 있는 도라전망대는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에 바로 접해 있다. 이 전망대에서는 개성공단, 북한의 기정동(비무장지대 내 마을), 금암골(협동농장), 그리고 개성 시가지 일부를 바라볼 수 있다.

전망대 근처에는 도라산역과 제3땅굴이 있다. 제3땅굴은 북한이 남침 목적으로 군사분계선을 넘어 435m 지점까지 파내려오다 1978년 우리측에 의해 발견된 땅굴이다.

■ 도라산역·도라전망대 견학 방법

도라산역과 도라전망대를 견학하는 방법에는 몇 가지가 있다. 즉, ① 임진각 관광지에서 셔틀버스(도라산역·도라전망대·제3땅굴 순회)를 이용하는 것 ② 열차를 이용해 도라산역으로 가서 도라전망대·제3땅굴 연계관광 셔틀버스를 이용하는 것 ③ 30인 이상 단체로 자체 버스를 이용하는 것 등이다. 월요일과 주중 공휴일에는 휴무이므로 견학할 수 없다.

민간인통제구역에 위치한 도라산역과 도라전망대 등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임진각 관광지 또는 임진강역에서 출입허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임진각 관광지에서 셔틀버스를 이용하거나 자체 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임진각 DMZ 관광대표소에 신분증을 제시하고 출입신청을 한다.

열차를 이용해 도라산역으로 가는 경우에는 임진강역에서(임진강역까지 열차를 타고 간 경우에는 하차하여) 신분증을 제시하고 출입신청을 한다. 도라산역까지만 가고자 한다면 임진강역에, 연계관광을 하고자 한다면 임진강역 파주관광대표소(031-940-8369)에 출입신청을 한다.

임진강역-도라산역 간은 별도로 운행되는 열차를 이용하여 이동한다. 임진강역-도라산역 간 열차 운행은 하루 3회(임진강발 11:00, 11:40, 12:40) 있으며, 그 중 1회(11:40)는 연계관광이 되지 않는다. 임진강역-도라산역 간에 열차로 출입할 수 있는 인원은 1회당 최대 300명(도라산역만 방문은 120명, 연계관광은 180명)으로 제한되어 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파주문화관광 웹사이트(tour.paju.go.kr - 파주관광 - 평화체험)를 참조하거나 임진각관광안내소(031-953-4744), DMZ관광대표소(031-954-0303) 등에 문의한다.

열차-셔틀버스 이용시 출입신청(임진강역) → 열차 탑승 → 도라산역 → 셔틀버스 탑승 → 제3땅굴
→ 도라전망대 → (통일촌) → 도라산역 → 열차 탑승 → 임진강역
셔틀버스(30분~1시간 간격) 이용시 출입신청(임진각 관광지) → 셔틀버스 탑승 → 제3땅굴 →
도라전망대 → 도라산역 → 통일촌 → 임진각 관광지

임진각 관광지

임진각 관광지는 남북이산의 한을 달래고 통일을 염원하는 장소로서 임진강 변에 개발되었다. 임진각은 1972년 남북공동성명 발표 직후에 이곳에 지어진 건물로, 옥상에 전망대가 있다.

군사분계선으로부터 약 5km 떨어진 이곳에는 실항민들이 북녘에 있는 가족과 조상에게 배례하는 망배단, 그리고 정전협정 체결 후에 포로들이 남쪽으로 귀환할 때 이용한 ‘자유의 다리’가 있다. 자유의 다리에는 방문자들이 북녘 고향과 혈육을 그리거나 통일을 염원하는 내용의 글귀들을 적어놓은 펼침막과 리본 등이 수없이 내걸린다.

임진각 옆 임진강에는 경의선 철도 교량 하나가 복구되어 있다. 경의선 철도는 이제 임진강 철교와 도라산역을 거쳐 북측의 판문역으로 연결되어 있다. 임진강 철교는 당초에 복선이었으나, 6·25전쟁 중에 두 철교가 모두 파괴된 후 하나만 복구되었고 다른 하나는 교각만 남아 있는 상태이다.

6·25전쟁 중 1950년 12월 장단역에서 멈춰선 뒤 50여 년간 비무장지대에서 녹슨 채로 있던 증기기관차(화통)는 보존처리를 거쳐 2009년 6월 25일부터 임진강 철교 근처에 전시되고 있다.

임진각 관광지에는 그 밖에 6·25전쟁 전적 기념물들, 경기평화센터, 평화누리 등도 있으며, 도라산역·도라전망대·제3땅굴 등을 순회하는 셔틀버스가 이곳으로부터 운행되고 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파주문화관광 웹사이트(tour.paju.go.kr-파주관광-평화체험)를 참조하거나 임진각관광안내소(031-953-4744)에 문의한다.

■ 교통편

- 파주 문산터미널에서 임진각까지 시내버스 운행
- 철도 이용시 임진각역에서 하차하여 도보(10분 소요)로 이동

판문점

판문점은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남북이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분단의 상징인 동시에 다양한 분야에서 남북 대화와 교류가 이루어져 온 통로이기도 하다.

판문점은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맺어진 곳으로, 정전협정의 이행을 위해 설치된 군사정전위원회와 중립국감독위원회 등 기구들이 위치한 특수지역이다. 판문점의 공동경비구역(Joint Security Area) 내에서 유엔군사령부측과 북한측이 군사분계선을 경계로 남쪽과 북쪽을 각각 관할한다.

군사분계선 남쪽 구역에는 남북 간의 연락 업무를 수행하는 남북연락사무소(우리측)가 소재한 ‘자유의 집’과, 남북회담이 열리는 ‘평화의 집’이 있으며, 북쪽 구역에는 북측의 판문각과 통일각이 있다. 판문점 근처에는 남과 북의 민간인 마을로서 각각 유일하게 비무장지대 내에 위치한 대성동과 기정동이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해 있다.

■ 견학신청

판문점 견학은 화~토요일에 할 수 있다. 판문점 견학 희망자는 방문희망일 60일 전에 신청해야 하며, 이후 구비서류를 갖춰 제출한다. 학교, 정부허가법인, 공무원 등은 통일부 남북회담본부(031-950-9200, 9208)에 신청한다. 접수처는 30~45명의 단체 견학을 주선하므로, 인원이 소수인 경우에는 단체 구성 등에 관해 접수처와 협의한다.

판문점 방문에는 약 90분이 소요된다(브리핑 30분, 견학 60분). 방문자는 신분증 휴대, 단정한 복장 착용 등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구체적인 신청절차와 서류 양식, 방문자 준수사항 등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통일부 남북회담 웹사이트(dialogue.unikorea.go.kr - 판문점 - 판문점 방문/견학)를 참조하거나 접수처에 문의한다.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통일부 북한자료센터는 북한 및 통일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와 전문 연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1989년 5월 정부의 특수자료 공개정책에 따라 설치되었다.

북한의 영화, 가요 등의 시청각 자료와 북한 및 통일 관련 국내외의 다양한 문헌자료를 제공한다. 북한 영화는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에 정기상영을 하고 있고, 단체신청을 받아 수시상영도 하고 있다. 이외에도 북한 TV방송 시청실을 운영하고, 북한실상 설명회도 개최한다.

■ 이용시간

평일 09:00~18:00

■ 교통편

- 지하철 2호선 서초역(6번 출구)에서 도보 15분(국립중앙도서관 내 위치)
- 지하철 7호선 고속버스터미널역(5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 참조/문의

- 웹사이트 : unibook, unikorea.go.kr
- 전화 : 02) 730-6658, 720-2429

통일교육원 홈페이지 주요 자료 안내

통일교육원 홈페이지(<http://www.uniedu.go.kr>)에서는 플래시 애니메이션, 만화, 게임 등 청소년 학습 관련 콘텐츠와 통일·북한 관련 영상·사진, 논문, 도서, 통계 등 통일교육 지도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유형 별로 제공하고 있다.

통일교육 관련 종합 자료

제 목	주요 내용	대상구분
통일문제이해	통일정책과 방안, 대북정책, 남북관계, 국제질서와 통일환경	교사용
북한이해	북한 정치·외교·군사·경제·사회·문화 분야별 실상	교사용
자주 묻는 통일 이야기 50	통일정책, 남북관계, 북한실상 관련 주요 사항	공 통
알기 쉽게 풀어 쓴 통일 이야기	분단의 원인과 통일의 필요성, 통일방안과 남북관계, 분단국 사례 등	중 / 고
한라에서 백두까지(플래시게임)	문제를 풀면서 한라에서 백두까지 가기(초·중등용)	초 / 중

남북한 사회·문화 비교 자료

제 목	주요 내용	대상구분
김정일시대 북한교육의 변화	북한의 교육정책, 학제, 김정일시대 교육의 특성	교사용
북한 학생들의 학교 생활 [21분]	북한 학생의 일과, 교육과정, 조직생활, 방과 후 생활	공 통
북한 주민들의 하루 생활 [20분]	북한 주민의 가정생활, 직장생활, 조직생활 등 하루일과	공 통
이슬이의 북한 방문기 [23분]	이슬이가 아버지와 함께 북한을 방문하여 겪는 이야기(아동·청소년용 플래시 애니메이션)	초 등
게임 소녀와 평양 소년(만화)	남북의 소년소녀가 게임을 통해 만나고 친해지면서 통일을 염원하게 됨(아동·청소년용 만화)	초 / 중

제 목	주 요 내 용	대상구분
북한의 선거제도 [31분]	제11기 최고인민회의 선거과정을 통해 본 북한의 선거제도	공 통
남북문화이해지 [80분]	문화이해지 기법을 이용한 통일교육 영상자료	공 통
북한드라마를 통해 본 북한 주민의 가치관 변화 [33분]	조선중앙TV 드라마를 통해 본 북한 주민의 가치관 변화상	공 통
북한 가요에 나타난 여성상 [23분]	북한 가요 7편을 통해 본 북한의 여성상, 북한 여성들의 삶을 규정하는 제도 및 실제 생활모습	공 통
북한만화영화의 이해 [47분]	북한 만화의 주제별 유형분류, 수업자료 활용경험 등	공 통
북한주민의 결혼과 가정생활 [36분]	북한 주민의 연애, 결혼, 육아, 가정생활 및 경제난 이후 변화	공 통
북한이탈주민의 언어생활에 나타나는 북한 언어정책의 영향	북한이탈주민의 우리말 인식현황, 해방전후 한반도 언어생활환경, 로동신문 <우리말다듬기시상토론> 분석	교사용
북한 농업개혁의 현황과 전망	사회주의농업의 이론, 제도, 개혁사례, 북한의 농업시스템 및 개혁의 조건과 과제 등	교사용
먹거리를 통해 본 북한 현실	북한의 식량난, 주식, 먹거리 문화	교사용
남북한의 역사인식 비교	북한 역사관의 특징, 남북한 역사인식 비교, 남북교류, 통일역사교육의 과제	교사용
남북한 예술 어떻게 변화했나	남북 예술의 특징, 분단 후 변화, 남북 교류현황	교사용
북한경제 어디까지 왔나	체제전환국의 경제개혁 사례, 북한의 경제개혁개방정책 현황과 성과	교사용
북한의 에너지 사정, 어제와 오늘	북한의 에너지정책, 공급구조, 수급현황	교사용
북·중 변경무역과 북한의 시장실태	북중 변경무역, 북한의 시장	교사용
정보화시대 북한의 정보화 수준	북한의 IT중시정책, 정보화 현황 및 실태, 정보통신부문 남북교류협력	교사용
북한과학기술의 이해	북한의 과학기술정책, 체제, 계획, 수준, 특징, 남북협력	교사용
북한의 IT 현황과 전망 [23분]	북한의 정보산업 육성배경 및 현황	공 통
북한의 관광자원 실태와 전망	북한의 관광환경, 정책, 기구, 금강산·개성·백두산 관광	교사용
남북한 IT 용어 비교	북한의 IT 산업현황, 남북한 IT 용어 비교	교사용
북한의 의료실태	북한의 고려의학체제, 의료교육, 의료인, 의료기관, 의료실태	교사용

제 목	주 요 내 용	대상구분
북한의 체육 실태	북한의 체육정책, 체육교육 및 선수양성, 조직, 시설, 대회, 국제교류 및 남북교류	교사용
북한의 문화재 실태	북한의 문화재 정책·관리실태·현황, 남북교류 방안	교사용
남북한 물류망 구축: 그 실상과 과제	북한의 주요 운송수단, 남북 교통망 연결사업 현황, 과제와 전망	교사용
북한의 환경정책과 실상	북한의 환경관, 정책, 실태, 남북교류현황	교사용
북한법을 보는 방법	북한법에 나타난 북한체제 및 사회의 변화상, 북한법의 이질성 및 이중성과 올바른 법해석	교사용
북한의 법제 정비 동향과 특징	북한의 법체계, 규범과 현실, 입법동향, 법제정비 평가와 전망	교사용

민족분단 극복방향 관련 자료

제 목	주 요 내 용	대상구분
통일 이후 동서독 주민들의 갈등과 사회통합	통일독일 주민 간 심리적 갈등 현실을 통해 제도적 통일을 넘어서 사회문화적 통일의 시사점 도출	교사용
독일,통일에서 통합으로-문답으로 알아보는 독일 통일	독일통일20년을 맞아 독일통일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자 문답식으로 구성	교사용
독일통일 20년 현황과 교훈	독일통일 20년의 현황과 과제	교사용
갈등을 넘어 통일로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 독일통일 전후 갈등 및 통합 사례, 남북통합과정과 공동체의식 연구	교사용
한반도 평화정착과 유럽연합의 교훈	유럽통합 과정, EU 조직체계, 한반도에 주는 시사점	교사용
새 The bird [20분]	남북의 조류학자 원홍구-원병오 부자의 사연을 각색 (아동·청소년용 애니메이션)	초 / 중
가자미의 눈물 [14분]	이산가족 할아버지의 고통을 통해 나이 어린 손녀가 통일의 필요성을 깨닫게 됨(아동·청소년용 애니메이션)	초 등
가자미의 눈물 [14분]	가자미의 눈물 자막·수화 삽입본(청각장애인용)	초 등
가자미의 눈물(영어판·일어판) [14분]	가자미의 눈물 영어·일어 자막 삽입본(재외동포용)	초 등

통일 · 대북 정책 설명자료

제 목	주 요 내 용	대상구분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 [9분]	상생공영정책의 비전, 추진원칙, 중점 추진과제 등	중 / 고
상생공영 시행시 모음집	「상생공영 시행시 짓기」공모전 모음집 수상작 및 상생공영정책 10문 10답	중 / 고

통일한국의 미래상 관련 자료

제 목	주 요 내 용	대상구분
헤미와 북한에서 온 친구[애니메이션]	헤미가 북한에서 온 친구 승준을 통해 서로 이해 해가며 통일의 필요성을 깨닫게 됨	중 / 고
헤미의 행복통일한국 [11분 애니]	헤미라는 고등학생이 꿈을 통해 통일한국의 미래상을 상상하게 됨(청소년용 애니메이션)	중 / 고
헤미의 행복통일한국 [11분 애니]	헤미의 행복통일한국 수화 · 자막 삽입본(청각장애인용)	중 / 고

북한 및 통일문제 관련 웹사이트

정부 및 공공기관

기 관 명	주 소
청와대	www.cwd.go.kr
통일부	www.unikorea.go.kr
통일교육원	www.uniedu.go.kr
남북회담본부	dialogue.unikorea.go.kr
북한자료센터	unibook.unikorea.go.kr
이산가족정보통합센터	reunion.unikorea.go.kr
남북경제협력통합지원센터	www.unikorea.go.kr/unieconomy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www.nuac.go.kr
국가정보원	www.nis.go.kr
교육과학기술부(인터넷통일학교)	www.tongil.mest.go.kr
외교통상부	www.mofat.go.kr
국방부	www.mnd.go.kr
파주시(파주관광)	tour.paju.go.kr (파주관광 - 평화체험)
한국관광공사(북한관광정보)	www.visitkorea.or.kr (북한 관광 정보)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www.kidmac.com

연구기관

기 관 명	주 소
통일연구원	www.kinu.or.kr
대외경제정책연구원	www.kiep.go.kr
미래전략연구원	www.kifs.org
북한연구소	www.nkorea.or.kr
세종연구소	www.sejong.org
외교안보연구원	www.ifans.go.kr

연구기관

기 관 명	주 소
평화문제연구소	www.ipa.re.kr
한국개발연구원	www.kdi.re.kr
한국교육개발원	www.kedi.re.kr
한국국방연구원	www.kida.re.kr
한국문화정책개발원	www.kctpi.re.kr
한국발전연구원	www.hanbal.com
현대경제연구원(북한정보뱅크)	www.nk-infobank.com

언론기관

기 관 명	주 소
KBS (아름다운 통일)	office.kbs.co.kr/tongil
KBS (남북의 창)	news.kbs.co.kr/snwindow
MBC (통일전망대)	www.imbc.com/broad/tv/culture/unity
조선일보 (NK조선)	www.nkchosun.com
중앙일보(북한네트)	nk.joins.com
통일뉴스	www.tongilnews.com
통일신문	www.unityinfo.co.kr

대학 · 대학원(연구소)

기 관 명	주 소
경남대학교극동문제연구소	ifes.kyungnam.ac.kr
경북대학교 평화문제연구소	webbuild.knu.ac.kr/~pri
고려대학교 평화연구소	www.peacekorea.or.kr
북한대학원대학교	www.nk.ac.kr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소	tongil.snu.ac.kr
연세대학교통일연구소	suny.yonsei.ac.kr/~ikus
중앙대학교민족통일연구소	cau.ac.kr/~cauind2/ku.html
한양대학교통일정책연구소	www.hanyang.ac.kr/code_html/H5EAJG

북한 및 통일문제 관련 방송프로그램

방송사	프로그램	방송시간
KBS 1TV	남북의 창	토 07:35~08:00
MBC TV	통일 전망대	월 13:35~14:05
KBS 라디오(한민족방송)	통일열차	월~토 00:10~01:00 (16:05~16:55 재방송)
FEBC 라디오(극동방송)	통일을 향하여	토 20:20~21:00
	남과 북이 하나되어	월~토 05:30~06:00

통일교육지원법

[일부개정 2009.10.19, 법률 제9800호]

제1조 (목적)

이 법은 통일교육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통일교육”이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 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도록 하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
2. “지역통일교육센터”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을 하고, 통일교육에 관한 정보를 수집·제공하는 기능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6조의3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단체 또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통일교육의 기본원칙)

- ① 통일교육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여야 한다.
- ② 통일교육은 개인적·당파적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3조의2 (통일교육 기본사항)

- ① 통일부장관은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른 통일교육을 하기 위한 기본사항을 정한다.
- ②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할 때에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4조 (통일교육기본계획의 수립)

- ①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통일교육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통일교육의 기본원칙·추진목표와 방향
 2. 통일교육과 관련하여 각 부처 및 기관·단체의 협조에 관한 사항
 3. 통일교육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지원에 관한 사항
 4. 통일교육실태의 조사·평가 및 시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통일교육에 관한 중요한 사항
- ③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④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통일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 삭제 <2008.12.31>

제6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① 국가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교육의 실시, 통일문제연구의 진흥, 통일교육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지원, 통일교육에 관한 교재의 개발·보급, 그 밖의 방법으로 통일교육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19>
- ② 국가는 통일교육을 하는 자(법인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10.19>
-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내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09.10.19>

제6조의2 (공공시설의 이용)

통일교육을 하는 자는 통일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시설을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

제6조의3 (지역통일교육센터의 지정·운영)

- ①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통일교육을 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단체 또는 시설(이하 “기관등”이라 한다)을 지역통일교육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지역통일교육센터로 지정된 기관등의 장은 그 지정된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 ③ 통일부장관은 지역통일교육센터로 지정된 기관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을 때
 2. 통일교육을 할 능력이 크게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
- ④ 통일부장관은 지역통일교육센터로 지정된 기관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3조에 따른 통일교육의 기본원칙을 위반하여 통일교육을 하였을 때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지원을 받거나 지원받은 경비를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때
 3.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
- ⑤ 통일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역통일교육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⑥ 그 밖에 지역통일교육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 (통일교육의 반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교육훈련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교육기관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과정에 통일교육(제3조의2제1항에 따른 통일교육에 관한 기본사항을 포함한다)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학교의 통일교육 진흥)

- ① 정부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초·중등학교”라 한다)의 통일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통일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교육(제3조의2제1항에 따른 통일교육에 관한 기본사항을 포함한다)이 초·중등학교의 교육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교육감은 교육과정에 통일교육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19>
- ③ 정부는 대학 등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에게 통일문제와 관련된 학과의 설치, 강좌의 개설, 연구소의 설치·운영 등을 권장할 수 있다.

제9조 (통일교육의 수강 요청 등)

- ①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을 하는 자,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종사하는 자, 통일대비업무에 종사하는 자, 그 밖에 통일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통일교육을 받도록 요청할 수 있다.
- ② 통일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통일교육대상자를 선정하려면 미리 해당 행정기관 또는 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의2 (통일교육 전문강사의 양성)

- ①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원에 통일교육 전문과정을 개설하여 그 과정을 수료

한 사람에게 통일교육 전문강사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개설되는 통일교육 전문과정의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9.10.19〉

제10조 (통일교육협의회)

- ① 통일교육을 하는 자는 효율적인 통일교육을 위한 협의·조정, 그 밖에 상호간의 협력증진을 위하여 통일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통일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 ② 협의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2 (통일교육위원)

- ①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 활동을 통하여 대국민 통일의지와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통일교육위원을 위촉한다.
- ② 통일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통일교육위원으로 위촉한다.
 - 1. 각급 교육기관 및 지역사회에서 통일교육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사람
 - 2. 제9조의2에 따라 통일교육 전문과정을 수료한 사람
 - 3. 그 밖에 통일문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③ 통일교육위원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 1. 통일교육의 실시
 - 2. 통일교육 관련 행사의 지원
 - 3. 그 밖에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항으로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 ④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통일교육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⑤ 이 법에 따른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단체 등은 통일교육위원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각종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⑥ 통일교육위원의 위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10.19〉

제11조 (고발)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을 하는 자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는 내용으로 통일교육을 하였을 때에는 수사기관 등에 고발하여야 한다.

부칙 〈제5752호, 1999.2.5〉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중간 생략 －

부칙 〈제9800호, 2009.10.1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통일교육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0. 4.13, 대통령령 제22121호]

제1조(목적)

이 영은 「통일교육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일교육기본계획)

- ①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수립한 통일교육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제3조(경비의 지원 등)

-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국가가 통일교육을 하는 자(법인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지원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일교육 시설·설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2. 통일교육 자료의 개발 및 보급에 필요한 비용
 3. 통일문제 관련 조사 및 연구에 필요한 비용
 4. 통일 관련 강좌의 개설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5.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통일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②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을 하는 자의 수행 능력, 전년도 실적 및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③ 통일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경비지원의 효과를 지원 대상자별로 3년마다 심사하여 제1항에 따른 경비를 계속 지원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④ 통일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지원을 받거나 지원 받은 경비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그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비를 회수할 수 있다.

제4조(공공시설의 이용)

- ① 통일교육을 하는 자는 법 제6조의2에 따라 통일교육을 위하여 각급 학교의 강당, 구민회관 등 공공시설을 이용하려는 경우 미리 해당 공공시설의 관리자에게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공공시설의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역통일교육센터의 지정 등)

- ①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라 지역통일교육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역통일교육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일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통일교육 전문인력의 보유 현황 및 운용계획서
 3.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보유 현황 및 운용계획서
 4. 사업계획서(재정운용계획서를 포함한다)
- ② 통일부장관은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라 지역통일교육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지역통일교육센터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③ 지역통일교육센터로 지정된 기관·단체 또는 시설의 장은 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법 제6조의3제2항에 따라 통일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통일교육의 반영)

- ① 법 제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설립한 교육훈련기관
 2.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연수기관
 3. 「평생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평생교육시설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통일교육을 위탁받은 기관
 5.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지정하는 공공연수기관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교육훈련기관과 제1항에 따른 사회교육기관은 법 제7조에 따라 해당 교육훈련과정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통일교육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2주 이상 3개월 미만인 교육훈련과정: 1시간 이상
 2.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교육훈련과정: 4시간 이상
 3. 6개월 이상인 교육훈련과정: 8시간 이상
- ③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의 기준과 내용(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통일교육에 관한 기본사항을 포함한다)에 관한 지침을 정한 경우에는 그 지침을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의2(학교의 통일교육 진흥)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통일부장관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초·중등학교”라 한다)의 교육과정에 통일교육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초·중등학교의 교육과정 중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한 통일교육의 실시
2. 통일교육 관련 자료의 보급 및 활용
3.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연수기관에 통일교육 관련 과정 개설 및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통일교육 실시
4. 통일교육 관련 연구학교의 지정 및 운영 활성화

5. 초·중등학교 통일교육 실태 조사 및 관련 자료 협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초·중등학교의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0.4.13]

제7조(통일교육협의회)

- ① 법 제10조에 따른 통일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0.4.13}
 1. 통일교육에 관한 조사 및 연구
 2. 통일교육에 관한 자료 수집 및 간행물의 발간
 3. 통일에 관한 인식 제고 및 홍보
 4. 통일교육 종사자의 자질 향상과 복리 증진
 5. 통일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6. 그 밖에 통일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협의회는 해당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사무국과 지방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8조(통일교육위원)

- ① 통일교육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② 통일교육위원에게는 별지 제3호서식의 통일교육위원증을 발급한다.
- ③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위원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4.13]

부칙 <제22121호, 2010.4.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통일교육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이 영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통일교육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2010 통일교육지침서 학교용

인 쇄 일 2010년 4월

발 행 일 2010년 4월

발 행 처 통일부 통일교육원
www.uniedu.go.kr

서울시 강북구 4,19길 275 (142-715)
Tel (02)901-7043,7176 / Fax (02)901-7082

인 쇄 사단법인 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

비매품

